연구보고서 2019-06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 분석

권태구 · 윤병우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래 국가통계방법론과 증거기반 정책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추계기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2019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 연구보고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집세 물가지수 작성방안 연구 등 「행정자료 활용」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세대별 니스(NEES) 특성 분석 등 「인구·사회통계」 기반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화 연구 등 「정책활용방법」 관련 통섭적인 연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방법론 분야에 있어서 동 연구보고서는 국민법의식조사 조사표 개선연구 등 「인지실험 기반 조사방법론 연구」 및 차등정보보호 적용 실험 연구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혁신적인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사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국가통계생산자의 혁신적인 통계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의 싱크탱크"로서 대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개선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0년 5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전 영 일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분석 자료 ····· 3
1.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 ····· 3
2. 통계기업등록부(Statistical Business Register, SBR) ····· 4
3. 가계금융복지조사 ····· 7

제3장 개인사업자DB의 주요 지표 ····· 9
1. 개인사업자의 사업특성 ····· 9
2.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연체 ····· 15
3. 정책: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 22
4. 가계부채: 자영업자 가구와 비자영업자 가구 ····· 23

제4장 개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 결정요인 ····· 25
1. 선행연구 ····· 25
2. 추정량과 자료 ····· 26
3. 추정결과 ····· 32

제5장 요약 ····· 38

참고문헌 ····· 39
부록 ····· 40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사업자의 부채 및 채무불이행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에는 2012~17년 기간에 대한 개인사업자DB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지난 5년 간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부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증가와 함께, 기업 및 비은행 대출 비중이 확대되었다. 개인사업자의 지난 5년 간 부채총액 증가는 평균 부채 규모가 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증가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추가로 지난 5년 간 채무불이행 발생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산업별 발생률 변화는 상이하다.

채무불이행 결정요인에 관한 모형분석 결과, 고용, 자산, 소득 등 전통적 경제적·재무적 요인 외에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종사상 지위, 개인사업자의 업종 등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관협동으로 개발 중인 개인사업자DB는 가계신용(한국은행), 자영업자 부채(금융위 등) 통계 등의 보완적 자료로서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용어 : 개인사업자DB, 부채, 채무불이행

제1장 서 론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5.1%로 OECD 평균(15.3%)을 크게 초과한다([그림 1]). 지난 4년간 취업자 비중이 1.7%p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4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OECD 회원국 중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를 제외하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국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저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고용 없는 성장, 기술에 의한 고용 대체 등에 의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영업은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임대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일부 업종으로 집중되어 경쟁이 심하고 과도한 부채로 수익성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다(김일광, 2018; 구윤혜·차경욱, 2019). 실제로 자영업자의 소멸률은 13.3%에 달하며, 창업 후 5년 생존율 또한 26.9%로 매우 낮다(김일광,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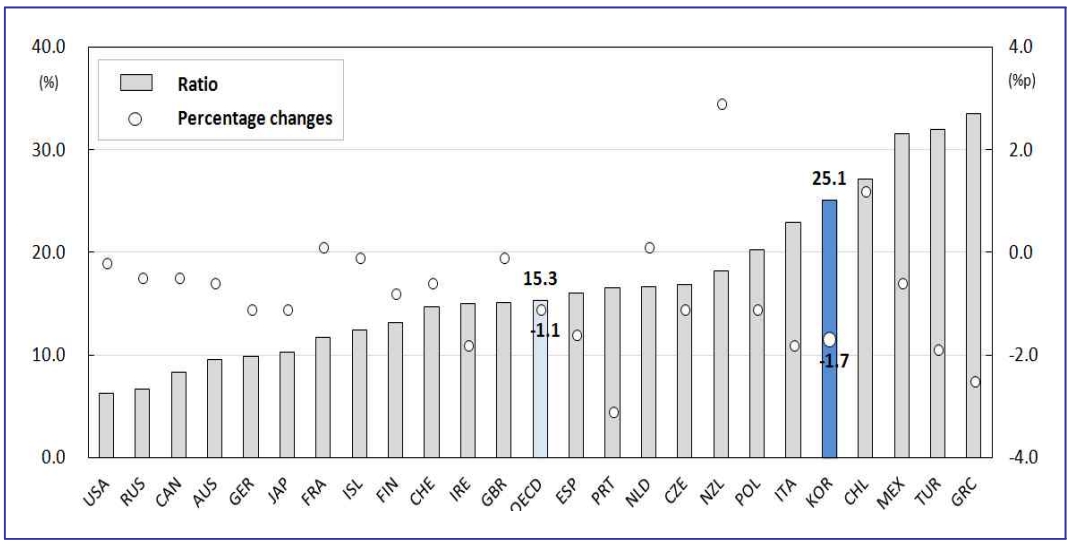

자료: OECD(https://stats.oecd.org)

주: 막대그래프는 2018년 각국의 자영업자 비중(좌축)이며, 점(dot)은 2014~18년 사이 자영업자 비율 변화(우축)를 각각 의미.

[그림 1]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 – 2018년

이와 같은 자영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최근에는 국내·외 경기침체, 대외 무역 분쟁 등에 따른 내수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지은정, 2012). 높은 취업자 비중 속에서 이와 같은 자영업의 위기는 개인과 가정의 재무상태,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가운데, 2015년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정호성, 2018).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저하시켜 소비 둔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유경원, 황진태, 2017). 최근 가계부채 증가 안정화 추세와는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를 보이며, 부동산·임대업 및 제2금융권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19).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은 '17년 9.7%, '18.2분기 12.9%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대출은 각각 26.6%, 22.2% 증가했다. '19년 3월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 및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소폭 증가('15년 3월 이후 하락 추세)했으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 '19. 5.).[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 및 가계부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자영업 금융지원 정책이 실효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면밀한 부채구조 파악이 선행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실증분석 자료에는 정보의 다양성 측면,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특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 및 자영업자 부채와 관련, 대표적 자료인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및 가계부채DB, 금융위원회(금감원)의 부채통계 또한 금융업계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사업자 특성이 부족하다.

현재 통계청에서 개발 중인 개인사업자DB는 이러한 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DB가 통계청이 보유·관리하는 사업자 정보, 개인·가구·주택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 KCB의 개인 및 사업자 신용 정보를 결합해 작성했기 때문이다. 즉, 내년 공표될 개인사업자DB 및 대외제공용 개인사업자DB를 활용하면 기존 자료가 포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또는 자영업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사업자(또는 사업체) 특성을 고려한 금융활동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민·관 공동으로 구축한 개인사업자DB의 분석과 활용이다. 구체적으로 구축 중인 자료를 먼저 분석해보고, 기존 자료와의 비교 등을 통해 활용성과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세부적 분석과제로는 부채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통계량을 산출해 보고 채무불이행 결정에 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추가로 개인사업자(또는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 간 금융활동이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

1) '19년 3월 현재, 가계/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소폭 증가('15년 3월 이후 하락 추세)했으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하 제2장에서는 본고의 실증분석에 활용된 자료를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개인사업자D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부채 및 채무불이행 특성을 요약한다.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채무불이행 결정요인에 관한 간략한 모형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한다.

제2장 분석 자료

이번 절에서는 분석 대상인 개인사업자DB 자료를 소개하고 DB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 통계기업등록부의 조사 개요, 주요 특징을 차례로 소개한다. 추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특징도 함께 제시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개인사업자DB와는 달리 비자영업자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종사상 지위에 따른 금융활동 수준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2)]

가. 개요

개인사업자의 대출유·무, 규모, 대출유형(가계/기업, 신용/담보), 업권(은행/비은행[3)])별 특징, 연체 현황 등의 실태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사업활동으로 일부 산업을 제외한 영리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주요항목에는 기업특성(사업주, 기업체 특성), 부채 및 연체 특성, 정책 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DB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는 통계기업등록부(SBR), KCB 금융빅데이터 등이 활용되었다(<표 1> 참조).[4)]

---

2)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20년 8월 최초 공표와 같은 해 말, 분기자료를 각각 보도할 예정이다. 본고 전반에 걸쳐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 '개인사업자DB'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한다.

3)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보험사, 카드사, 비카드 여전사(할부사, 기술금융), 종금·투신·창투·증권사, 보증기관, 우체국 등이 있다.

4) 통계청은 등록센서스, 주택소유통계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국적, 가구원, 자녀 수, 거처형태, 주택면적 등 가구특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표 1〉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의 주요 항목

범주		변수	출처
기업 특성	사업주	성, 연령	SBR
	기업체	산업(세세분류), 지역(시·도, 시군구), 개·폐업 일자, 중소기업구분, 매출액, 종사자수	SBR
*가구특성**		*국적, 가구원·자녀 수, 거처형태, 주택면적,*	*등록센서스, 주택소유*
부채		대출×잔액·건수×유형별(신용·담보·기타)·업권별(은행·비은행)	KCB
연체		대출×잔액·건수×유형별(신용·담보·기타)·업권별(은행·비은행)	
정책		대출·연체×건수·잔액×정책(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주: * 가구특성은 향후 추가 예정.

주요 통계용어는 가계대출(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으로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기업대출(사업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은행권(국내 시중은행 또는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비은행권(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보험사, 조합, 캐피탈, 저축은행, 증권사 등), 연체(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이 있다.

2. 통계기업등록부(Statistical Business Register, SBR)[5)]

가. 개요

통계기업등록부(SBR)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융복합하여 우리나라 경제모집단(기업체 및 사업체 단위)을 연도별로 구축한 것이다.

통계기업등록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단위(기업체, 사업체)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로 관리하여 경제통계의 통합 모집단 및 표본 추출용으로 관리하는 DB이다. 통계기업등록부는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 모집단 제공·통계 작성 지원 등이 주요 목적이다. '경제분석을 위한 자료제공'도 작성 목적에 포함된다. 산업별 기업체 수, 전산업 대비 비중, 조직형태별 비중 및 종사자 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공공/민간 및 영리/비영리에 관계없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에 의해 수집 가능한 모든 기업자료를 작성대상으로 하는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표 2>와 같다. '16년 7월 2014년

5) 본 절은 '통계기업등록부 설명회 자료'(행정자료관리과, 2018), '경제부문 통계 모집단으로서 통계기업등록부 작성('17년 기준)'(통계청 보도자료, 2019. 4. 8.)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기준 통계기업등록부를 시범 구축했으며, ’17년 4월 외부 제공을 시작했다. ’19년 3월에는 2017년 기준 통계기업등록부를 작성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법인기업, 개인기업)을 포괄하나, 자가 생산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단위(가구 등)는 제외한다. 기업체, 사업체 단위별로 기본정보와 산업분류, 종사자, 매출액 등을 제공한다. 기본정보에는 사업체 주소, 대표자 성별, 출생년도, 개업/폐업일 등이 포함된다. 한편, 종사자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상 유급근로자를 활용하며 매출액은 국세청 법인세 자료, 사업소득신고 자료상의 매출액을 사용한다. 통계기업등록부는 구축과정에 사용되는 행정자료의 추가적인 정제 결과를 반영해 매출액 등 수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표 2〉 통계기업등록부(SBR)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기관	자료명	용도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사업체, 기업체 기본사항
	부가세자료, 법인세자료, 사업소득신고(복식기장, 간편장부)	사업체, 기업체 매출액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자료_사업장 및 가입자, 고용보험_피보험자 및 상실자	사업체, 기업체 종사자
통계자료	전국사업체조사(행정, 조사 연계), 경제총조사(행정, 조사 연계), 광공업(참고)·도소매업·서비스업·기업활동조사(이상 참고)	조사 - 행정 연계, 매출액 및 종사자 배분
행정통계	일자리 통계, 영리법인 통계, 기업생멸 통계	산업분류 일치(기업별)

전국사업체 조사는 물리적 장소가 존재하는 사업체만을 포괄하는 반면, SBR은 물리적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도 포괄한다. 통계단위 또한 사업체 외에 기업집단, 기업체 등을 포괄한다.

나. 기업단위

통계기업등록부의 기본적 기업단위는 사업자, 사업체, 기업체로 구성된다(<표 3> 참조). 사업자는 행정자료의 개념으로 다시 사람 위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장소 위주의 종된사업장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사업체는 조사자료의 개념으로 조사편의상 장소를 묶어

관리하고 기업체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초로 하여 사업자 및 사업체를 묶는다. 구체적인 구성항목 및 개념도는 아래 <표 3>, [그림 2]와 같다.

〈표 3〉 기업등록부 구성 항목

구성 단위	사업자 (행정자료 개념)		사업체 (조사자료 개념)	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사람위주	종된사업장일련번호 장소위주	조사편의상 장소 묶음	법인등록번호 묶음
규모	683만개	719만개	702만개	616만개
대표항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키	종된사업장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키	법인등록번호, 기업체키
분류항목	업종명, 주업종코드		산업분류	대표 산업분류
공통항목	사업자(체)명, 대표자명(성별), 소재지, 창설년월, 조직구분(형태), 매출액, 종사자수 등			

자료: 통계기업등록부 설명자료, 통계청,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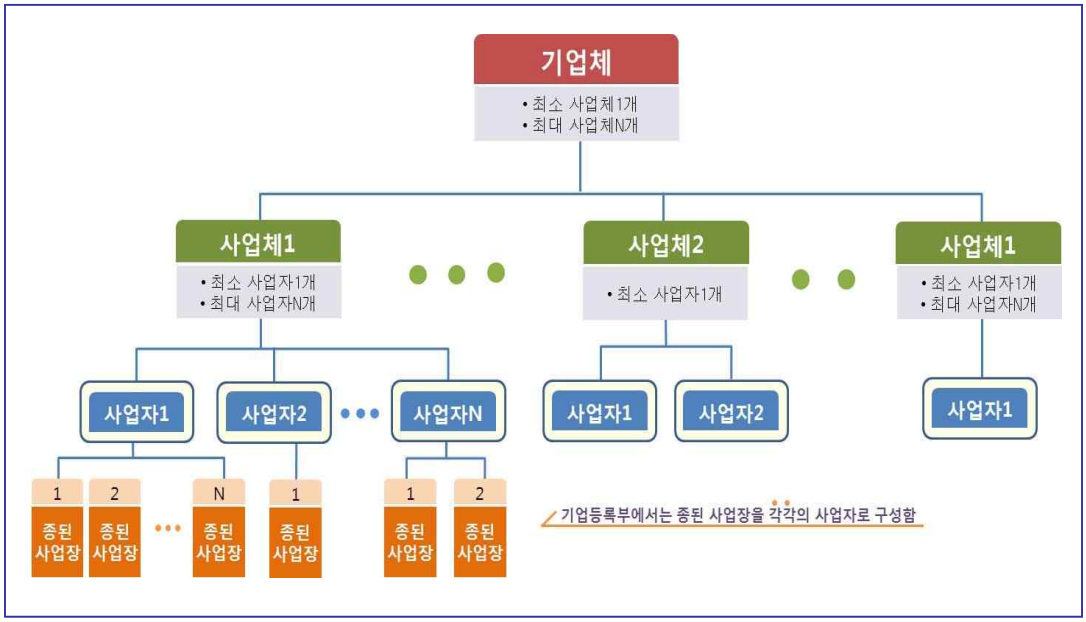

자료: 통계기업등록부 설명자료, 통계청, 2018.

[그림 2] SBR 구성단위 개념도

3. 가계금융복지조사[6)]

가계금융·복지조사(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는 가계금융조사(2010~11년)에 복지부문을 추가하여 ’12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 목적은 가구의 실물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의 규모, 분포, 구성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사회·금융정책이나 학문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가계부문의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재정 및 부동산 정책, 통화 및 금리 정책, 가계신용 관리 등을 위한 기본정보로도 활용된다(권태구, 2018).

가계의 경제사회적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금융 및 재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러 관계기관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는 가계조사를 수행했는데, 바로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금융감독원의 가계신용조사, 한국은행의 한은패널조사[7)] 등이다. 이후 이들 유사 조사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0년 이들 3개 조사를 통합한 연간 패널조사 형태인 가계금융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12년 복지정책 확대라는 정부기조에 부응하여 가계의 금융부문 외에 복지영역까지 조사영역을 확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표본확보를 위해 표본을 확대개편하고 조사명칭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했다(통계개발원, 2015). ’15년에는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이를 매년 1개 그룹씩 신규 표본으로 교체(기존표본 중 한 개 그룹이 탈락)하는 연동패널이 도입되었다.

금융부문은 가구구성, 자산 및 금융자산운용 계획,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등 178개 항목을 포괄하고 있다. 크게 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이사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문은 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노후생활 등 165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금융부문과 약 70%의 항목이 중복된다. 주요항목은 <표 4>와 같다.

〈표 4〉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항목

구분		주요항목
- 금융부문		
I. 가구구성	가구주 및 가구원	가구원수,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동거, 교육, 혼인, 종사상 지위, 등록장애인 여부, 국적 또는 외국인 여부, 가구주 산업/직업

6) 통계청(2012), 통계개발원(2015), 통계청(2017), 김서영(2018), 권태구(2018) 등을 참고

7) 한은패널조사는 시험조사 단계에서 가계자산조사와 가계신용조사와 통합되어 실제 공표되지는 않음.

구분		주요항목
II. 자 산	1. 실물자산	거주주택 종류, 주거/점유 면적, 입주형태, 현재시가, 임대보증금, 월세, 거주주택 외 부동산, 부동산구입 계약·중도금, 자동차, 기타 실물자산
	2. 금융자산	현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립/예치식 저축 및 펀드, 저축/보장성 보험, 주식·채권, 권리금, 기타 금융자산(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곗돈),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형태의 자산
	3. 금융자산 운용	여유자금 운용, 투자 목적, 운용 방법 및 고려사항
	4. 부동산 운용	1년 후 주택가격 변화, 여유자금 부동산 투자 여부/투자 목적, 선호 부동산, 투자하지 않는 이유
III. 부 채	1. 금융부채	담보/신용대출, 신용카드 대출, 할부, 금융·리스, 외상·빌린 돈, 낼 곗돈, 연금형 부채
	2. 부채상환 능력	부채 규모 전망/증가 사유, 규모 변화, 상환방법, 납부 기일 경과 여부 및 사유, 30일 이상 미상환 여부, 상환 시 생계부담 정도, 가계지출 절감 여부, 상환 능력
IV. 소 득	소득	근로/사업/재산소득, 공적 이전,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V. 지 출	경상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VI. 이 사	패널관리	이사 계획, 시기, 장소
부가항목	자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가주택의 수선비 및 재산세
- 복지부문		
V.	지 출	식료품/주거/교육/의료/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전체생활비
VI.	노후생활	은퇴여부, 향후 은퇴연령, 은퇴 후 최소 및 적정 생활비, 노후준비 상황, 은퇴 후 생활비 마련 정도 및 방법

제3장 개인사업자DB의 주요 지표

본 절에서는 개인사업자DB를 활용해 2012~17년 기간 중 개인사업자의 사업 및 금융 활동 주요 특성을 제시한다. 먼저 사업주 및 기업체 특성 즉, 사업주의 성별, 연령 등 사업주 특성과 산업, 지역, 진입과 퇴출, 매출액, 종사자 등 통계기업등록부가 포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특성을 차례로 제시한다(1. 개인사업자의 사업특성). 다음으로 2012~17년 기간, 개인사업자의 부채 및 채무불이행 특성을 제시한다(2. 부채와 연체). 구체적으로 부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비중, 부채의 규모, 부채의 종류(가계대출, 기업대출), 업권별 대출 비중 등 부채특성과 채무불이행(여부, 규모 등) 특성을 먼저 제시하고 이들 특성이 주요 기업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도 제시한다. 한편, 개인사업자DB에는 햇살론 등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 변수도 존재한다. 해당 사업의 수혜 및 연체 특성도 간략히 살펴본다. 본 절의 마지막에서는 개인사업자(또는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의 부채 특성 비교를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제시한다.

1. 개인사업자의 사업특성

가. 총괄

2017년 현재, 개인사업자는 2012년 대비 12.4% 증가한 6,130천 개로 지난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표 5> 참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여성) 사업주 비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증가)하여 2017년 현재, 57.4%(42.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사업주 비중이 29.7%로 가장 큰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사업주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12년 → '17년, 17.7% → 23.1%)했다.

활동여부를 살펴보면, 2017년 등록사업자 6,130천 개 중 77.4%인 4,745개 사업자가 활동상태에 있으며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비활동 사업주와 폐업한 사업주 비중은 각각 13.0%, 9.6%를 기록하였다(<표 6> 참조). 활동 사업주 비중은 지난 5년간 0.7%p 소폭 감소한 가운데, 비활동 사업주, 폐업 사업주는 각각 3.5%p, 2.7%p 증가, 감소했다.

한편, 2017년 새로 사업자로 등록한 신규진입 비중은 14.8%이다(<표 7> 참조).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신규진입 비중은 '13년(14.1%)을 제외하고 지난 5년간 14.8~15.1% 수준을 보였다. 다만, 신규진입 사업자의 진입 첫 해 활동여부를 살펴보면, 비활동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12년 → '17년: 14.6% → 21.5%), 활동 및 폐업 비중은 비교적 큰 폭의 감

소를 보였다(같은 기간 각각 73.2% → 69.7%, 12.1% → 8.8%).

〈표 5〉 개인사업자 활동여부

(단위: 천 개, %)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전체	6,130	5,920	5,730	5,543	5,462	5,452
	[12.4]	[8.6]	[5.1]	[1.7]	[0.2]	[-]
활동	4,745	4,576	4,401	4,354	4,205	4,260
	(77.4)	(77.3)	(76.8)	(78.6)	(77.0)	(78.1)
비활동	794	737	738	575	613	519
	(13.0)	(12.4)	(12.9)	(10.4)	(11.2)	(9.5)
폐업	591	607	591	614	644	673
	(9.6)	(10.3)	(10.3)	(11.1)	(11.8)	(12.3)

주. (%) - 전체 대비 비중, [%] - 2012년 대비 증가율.

〈표 6〉 개인사업자의 인적특성

(단위: 천 개, %, %p)

		2017	[△]	2016	2015	2014	2013	2012
전체		6,130		5,920	5,730	5,543	5,462	5,452
		(3.5)		(3.3)	(3.4)	(1.5)	(0.2)	
성별	남자	57.4	[-1.5]	57.7	58.2	58.5	58.7	58.9
	여자	42.3	[1.7]	41.9	41.5	40.9	40.7	40.6
연령	30 미만	4.3	[0.1]	4.1	3.9	3.9	3.9	4.2
	30-39	15.4	[-1.8]	15.7	15.8	16	16.6	17.2
	40-49	27	[-3.0]	27.8	28.4	29.2	29.7	30
	50-59	29.7	[0.4]	30	30.1	30.2	29.9	29.3
	60 이상	23.1	[5.4]	21.9	20.9	19.8	18.7	17.7

자료: 개인사업자DB 2012~17년, 통계청.

주: 1. (%) - 전년비 증가율, [△] - 2012년 대비 비중 변화(%p).

2. 항목별 미식별 관측치가 존재하는 관계로 부분의 합 또는 차이가 전체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표 7〉 신규진입 개인사업자의 비중과 활동여부

(단위: 천 개, %)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신규진입	906	884	862	823	772	813
	(14.8)	(14.9)	(15.1)	(14.9)	(14.1)	(14.9)
	[11.3]	[8.7]	[6.0]	[1.2]	[-5.0]	[-]
활동	69.7	71.7	72.1	72.7	71.8	73.2
비활동	21.5	18.9	18.2	16.2	16.4	14.6
폐업	8.8	9.4	9.7	11.1	11.8	12.1

주: 1. 신규진입의 (%)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비중이며, 활동, 비활동, 폐업은 각각 신규진입 사업자 대비 비중.

2. [%] - 2012년 대비 증가율.

〈표 8〉 종사자수, 매출액, 업력 – 활동 및 폐업사업자

			(단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활동	종사자수	평균	(명)	0.64	0.65	0.66	0.67	0.69	0.66
		중간값		0.00	0.00	0.00	0.00	0.00	0.00
		0명	(%)	81.9	81.8	81.7	82.1	82.1	83.3
		1명		7.0	6.9	7.0	6.6	6.5	5.8
		2～5명		7.7	7.7	7.7	7.5	7.5	7.2
		5+		3.4	3.6	3.7	3.8	3.9	3.8
	매출액	평균	(백만 원)	192.5	189.2	197.0	186.6	186.8	184.3
		중간값		51.0	50.0	50.0	47.0	45.0	41.0
		5천 이하	(%)	49.1	49.6	49.9	51.3	52.3	54.6
		～ 1억		16.4	16.4	16.2	15.8	15.5	14.8
		～ 3억		20.0	19.7	19.4	18.9	18.4	17.3
		3억 이상		14.6	14.3	14.6	14.0	13.9	13.4
	업력	평균	(년)	8.1	8.0	7.9	7.8	7.7	7.4
		중간값		5.4	5.4	5.3	5.4	5.4	5.1
		1년 미만	(%)	13.4	13.9	14.2	13.8	13.2	14.0
		1～3년		21.2	20.9	20.3	19.9	20.6	21.2
		3～5년		13.4	13.0	13.4	13.8	13.7	13.9
		5년+		52.1	52.2	52.1	52.6	52.5	50.9
폐업	업력	평균	(년)	4.5	4.5	4.4	4.2	4.0	3.9
		1년 미만	(%)	23.9	23.9	24.8	25.3	25.1	26.3
		1～3년		32.7	32.3	31.6	32.9	34.7	34.5
		3～5년		14.3	14.8	15.2	14.9	14.7	14.7
		5년+		29.1	29.0	28.4	27.0	25.6	24.5

<표 8>은 활동 개인사업자의 종사자, 매출액, 업력과 폐업 개인사업자의 업력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17년 현재, 활동기업의 종사자수, 매출액, 업력 평균은 각각 0.64명, 192.5백만 원, 8.1년이다.

종사자수를 범주별 비중으로 살펴보면 ’17년 현재, 종사자가 0명인 사업주, 5명 이상인 사업주의 비중은 각각 81.9%, 3.4%로 ’12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매출액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비중이 49.1%로 ’12년 대비 5.5%p 감소했고 같은 기간 5천만 원~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 원 이상 범주의 비중은 각각 1.6%p, 2.7%p, 1.2%p 증가했다. 매출액의 이와 같은 비중 변화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분포의 모양에 큰 변화 없이 우측 이동한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활동 중인 개인사업자의 업력은 소폭 증가했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업력이 5년 이상(1년 미만)인 활동기업의 비중은 1.3%p(0.6%p) 증가(감소)했다. 한편,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업력을 살펴보면, ’17년 폐업사업자의 29.1%가 업력 5년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이 비중은 지난 5년간 4.6%p 증가했다.

나. 산업별 특성

<표 9>는 2012~17년에 걸친 산업별 개인사업자의 비중을 활동률, 폐업률, 신규진입률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2017년 현재, 개인사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23.7%), 부동산·임대업(22.1%), 음식·숙박업(13.5%), 운수업(9.2%), 제조업(6.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산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 비중의 증가(2.9%p)와 도소매업의 감소(2.4%p)가 두드러진다.

<표 9>의 활동률을 살펴보면, 운수업(89.6%), 제조업(89.0%), 건설업(85.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동산·임대업의 활동률은 지난 5년간 8.1%p 감소한 66.9%로 주요 산업 중 가장 낮다. 한편, 건설업, 음식·숙박업의 활동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지난 5년간 각각 3.2%p, 2.4%p 증가).

폐업률의 경우, 음식·숙박업(14.7%), 도·소매업(12.3%),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8.7%), 건설업(8.5%) 순으로 높았고, 지난 5년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폐업률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각각 3.1%p, 2.9%p 감소). 신규진입률은 음식숙박업(19.7%), 도소매업(16.0%),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15.3%), 건설업(14.2%) 순으로 높았고 지난 5년간 부동산·임대업의 신규진입률이 3.3%p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신규진입과 퇴출(폐업)을 고려할 때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건설업 내 개인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은 2017년 현재, 산업별 개인사업자의 고용자수 수준을 전체평균과 비교·제시하고 있다. 업종별 평균 고용인 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1.7명으로 전체평균의 2.7배 수준이다. 한편, 제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산업들 모두 고용인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비중이 80%를 초과한다.

〈표 9〉 산업별 개인사업자의 비중, 활동·폐업 및 신규진입률 – 2012~17년

(단위: %, %p)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전산업 대비 산업별 비중							
제조업	6.7	[-0.5]	6.8	7.0	7.2	7.2	7.2
건설업	5.7	[0.3]	5.7	5.6	5.5	5.5	5.4
도소매	23.7	[-2.4]	24.3	24.9	25.4	25.8	26.1
운수	9.2	[-0.5]	9.4	9.5	9.7	9.8	9.7
음식, 숙박	13.5	[-0.8]	13.9	14.2	14.2	14.2	14.3
부동산, 임대	22.1	[2.9]	21.4	20.5	20	19.6	19.2
협회, 단체, 개인서비스	5.2	[-0.2]	5.4	5.4	5.4	5.4	5.4
활동률							
제조업	89.0	[2]	88.4	87.9	87.9	86.0	87.0
건설업	85.3	[3.2]	84.8	83.7	83.5	81.8	82.1
도소매	75.4	[0.6]	75.1	74.9	75.1	73.4	74.8
운수	89.6	[1.2]	89.5	88.6	89.7	89.1	88.4
음식, 숙박	82.6	[2.4]	81.9	81.9	81.3	79.3	80.2
부동산, 임대	66.9	[-8.1]	67.2	65.6	73.1	72.6	75.0
협회, 단체, 개인서비스	85.2	[1.6]	84.5	84.9	84.6	80.8	83.6
폐업률							
제조업	7.3	[-1.8]	7.8	8.1	8.3	8.9	9.1
건설업	8.5	[-2.5]	8.8	9.3	9.6	10.8	11.0
도소매	12.3	[-3.1]	12.7	12.7	13.7	14.9	15.4
운수	6.3	[-2.4]	6.2	6.6	7.8	8.2	8.7
음식, 숙박	14.7	[-2.9]	15.2	15	16.1	16.7	17.6
부동산, 임대	5.1	[-1.6]	5.8	5.9	7.1	6.7	6.7
협회, 단체, 개인서비스	8.7	[-2.0]	9.1	8.6	9.4	10.1	10.7
신규진입률							
제조업	8.7	[-1.6]	9.2	9.8	10.6	10.2	10.3
건설업	14.2	[1]	14.2	14.2	13.5	13	13.2
도소매	16.0	[-1.2]	16.3	16.7	17	16.4	17.2
운수	9.5	[-1.6]	9.8	10.4	10.7	10.9	11.1
음식, 숙박	19.7	[-1.5]	20.5	20.8	21.4	20.4	21.2
부동산, 임대	12.4	[3.3]	12.1	12	10.2	8.8	9.1
협회, 단체, 개인서비스	15.3	[0.2]	15.4	14	14.1	13.4	15.1

〈표 10〉 업종별 개인사업자의 고용자수 – 2017년

(단위: 명, %)

	평균 고용자수		범주(%)			
			0명	1명	2~5명	5+
전산업	0.6	(100)	81.9	7.0	7.7	3.4
제조업	1.7	(269)	57.7	12.6	17.2	12.4
건설업	0.5	(82.0)	83.6	5.6	7.1	3.8
도소매	0.4	(61.3)	78.4	9.9	9.5	2.2
운수	0.1	(11.2)	97.2	1.5	0.9	0.4
음식, 숙박	0.6	(93.3)	75.9	9.8	10.2	4.1
부동산, 임대	0.1	(8.7)	96.3	2.1	1.3	0.3
협회, 단체, 개인서비스	0.3	(53.5)	88.1	5.3	4.3	2.3

주: (%) - 전산업 대비 비중.

2017년 현재, 전체 개인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192.5백만 원인 가운데, 제조업(384.3백만 원), 도소매업(311.9백만 원) 등이 평균을 비교적 크게 초과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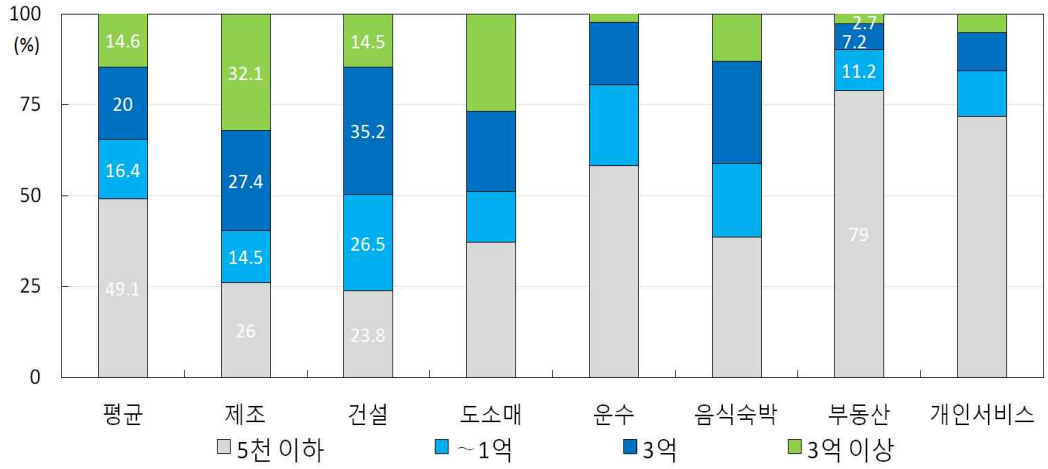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전산업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음식숙박	부동산	개인서비스
매출액	192.5	384.3	198.3	311.9	68.5	138.3	69.9	73.4
	(100)	(199.6)	(103)	(162.1)	(35.6)	(71.9)	(36.3)	(38.2)

주: (%) - 전산업 대비 비율.

[그림 3] 산업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 2017년

활동기업의 업력을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주요 산업에서 업력 5년 이상 사업자의 비중이 절반인 50%을 초과하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65.7%), 운수업(61.3%)의 비중이 특히 높다. 한편, 음식·숙박업의 경우 1년 미만, 1년~3년 미만 활동기업 비중이 각각 21.1%, 28.4%로 3년 미만의 기업 비중이 50%에 육박하는데, 이 또한 신규진입 및 폐업률과 함께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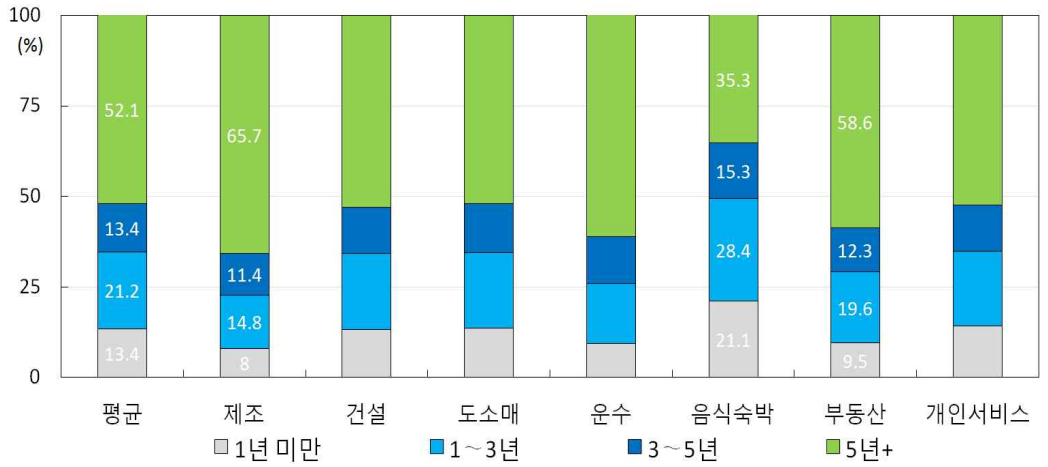

(단위: 년, %)

	전산업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음식숙박	부동산	개인서비스
업력	8.1	10.2	7.6	7.1	9.5	4.9	8.1	7.6
	(100)	(126.3)	(93.2)	(88.1)	(116.6)	(60.8)	(99.8)	(93.6)

주: (%) - 전산업 대비 비율.

[그림 4] 산업별 개인사업자의 업력 – 2017년

2.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연체

가. 부채

<표 11>은 가계 및 기업대출 등 부채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의 규모와 비중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부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비중은 64.2%(3,933천 개)로 지난 5년간 3.2%p 증가하였다. 부채종류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의 59.1%('12년 대비 2.1%p 증가)가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5.3%는 기업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모두 보유한 가구 비중은 20.3%이며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전체의 35.8%이다.

〈표 11〉 부채의 유형별 유무

(단위: 천 개, %, %p)

		2017	(△)	2016	2015	2014	2013	2012
개인사업자수		6,130		5,920	5,730	5,543	5,462	5,452
부채보유		3,933		3,786	3,711	3,563	3,400	3,327
		(64.2)	3.2	(63.9)	(64.8)	(64.3)	(62.2)	(61)
가계부채		(59.1)	2.1	(59.2)	(60)	(59.9)	(58.1)	(57)
기업부채		(25.3)	4.0	(23.8)	(23.4)	(21.9)	(21.1)	(20.9)
부채 유형	순가계	(38.8)	-1.3	(40.1)	(41.4)	(42.4)	(41.1)	(40.1)
	순기업	(5)	1	(4.7)	(4.7)	(4.4)	(4.2)	(4.1)
	가계 & 기업	(20.3)	3	(19.1)	(18.6)	(17.5)	(16.9)	(16.9)
부채없음		(35.8)	-3.2	(36.1)	(35.2)	(35.7)	(37.8)	(39)

주: △ = 2017-2012.

<표 12>는 2012~17년 기간 중 부채 유형별, 업권별 평균 부채와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부채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의 평균 부채액은 206.4백만 원이며, 이 중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각 58.1%(119.8백만 원), 41.9%(86.5백만 원)을 차지한다. 2017년 현재, 가계부채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기업부채(7.7%)가 더 높았다(가계부채의 경우 연평균 4.9%).

한편, 가계부채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기타대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 부채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의 평균 가계부채 119.8백만 원 중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은 11.3%, 42.4%(2012년 대비 각각 1.7%p, 2.5%p 감소)이며 기타담보대출은 각각 39.4%이다. 주택담보, 기타담보 대출비율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가계부채 중 담보를 통한 대출비율은 변화가 크지 않다('12년, 82.0% → '17년, 81.8%).

추가로 <표 12>의 하단에는 업권별 대출비중과 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은행 및 비은행을 통한 대출비중은 각각 62.6%, 37.5%이며 2012년(66.5%, 33.4%)과 비교해 비은행권을 통한 대출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특히 비은행 기업대출의 경우 지난 5년간 3.3%p 증가했다.

〈표 12〉 연도별, 유형별 평균 부채액 및 비중

			단위	2017	(△)	2016	2015	2014	2013	2012
전체부채			(백만 원)	206.4	6.03*	194.1	180	167.5	159.6	154
가계부채			(백만 원)	119.8	4.9*	115.9	107.2	101	96.8	94.3
			(%)	(58.1)	-3.1	(59.7)	(59.6)	(60.3)	(60.7)	(61.2)
	신용		(%)	[11.3]	-1.7	[11.4]	[11.7]	[12.1]	[12.6]	[13]
	주택담보		(%)	[42.4]	-2.5	[43.7]	[44.5]	[44.9]	[45.2]	[44.9]
	기타담보		(%)	[39.4]	2.3	[39.4]	[38.3]	[37.6]	[37.1]	[37.1]
기업부채			(백만 원)	86.5	7.7*	78.2	72.8	66.5	62.8	59.7
			(%)	(41.9)	3.1	(40.3)	(40.4)	(39.7)	(39.3)	(38.8)
업권 × 유형	가계 & 은행		(%)	(29)	-3.9	(29.8)	(30.6)	(31.1)	(31.9)	(32.9)
	가계 & 비은행		(%)	(29.1)	0.8	(29.9)	(28.9)	(29.2)	(28.7)	(28.3)
	기업 & 은행		(%)	(33.6)	-	(33.9)	(34.7)	(34.4)	(34.3)	(33.6)
	기업 & 비은행		(%)	(8.4)	3.3	(6.4)	(5.8)	(5.3)	(5.1)	(5.1)

주. (%) - 전체 대비 비중, [%] - 가계부채 대비 비중, △ = 2017-2012, * - 연평균 증가율.

<표 13>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채 총액과 산업별 평균부채, 총액 등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2017년 현재,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채 총액은 811조 6천억 원으로 지난

〈표 13〉 전체 및 산업별 부채 총액 – 2017년

	2017						2012	
	평균 (백만 원)			부채총액 (조 원)			평균 (백만 원)	부채총액 (조 원)
개인사업자 전체	206	(100)	[6.0]	811.6	(100)	[9.6]	154	512.4
제조업	286	(138.7)	[4.9]	85.9	(10.6)	[6.1]	226	63.9
건설업	135	(65.5)	[7.7]	33.7	(4.1)	[12.4]	93	18.7
도소매	149	(72.4)	[4.9]	140.7	(17.3)	[6.5]	118	102.6
운수	85	(41.3)	[7.7]	31.0	(3.8)	[10.4]	59	18.9
음식, 숙박	157	(76.1)	[6.1]	85.4	(10.5)	[9.3]	117	54.7
부동산, 임대	375	(181.7)	[5.7]	293.5	(36.2)	[12.7]	284	161.3
협회·단체·개인서비스	124	(60.1)	[4.2]	24.6	(3)	[7.0]	101	17.6
기타	211	(102.1)	[4.5]	116.8	(14.4)	[9.3]	169	74.7

주. [%] - 연평균 증가율, (%) - 전체 대비 비중.

5년간 9.6% 증가했다.[8] 산업별로는 부동산·임대업(36.2%), 도소매업(17.3%), 제조업(10.6%), 음식숙박업(10.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산업별 평균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현재, 부동산·임대업(제조업)의 평균부채는 375백만 원(286백만 원)으로 전체 평균을 81.7%(38.7%) 초과한다. 한편, 지난 5년간 건설업(7.7%), 음식숙박업(6.1%) 부채 보유자의 평균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총액 기준으로는 부동산임대업(12.7%), 건설업(12.4%)의 부채총액이 높은 증가율을 시현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부채총액 증가는 부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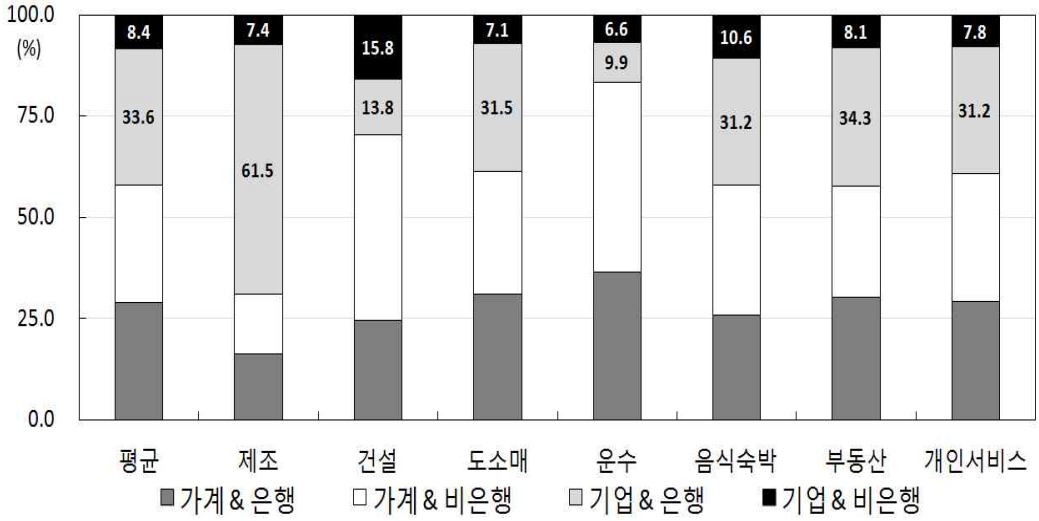

	전산업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음식숙박	부동산	개인서비스
기업대출 비중	41.9	68.9	29.6	38.6	16.6	41.8	42.4	39
(△)	(3.1)	(0.3)	(2.3)	(0.7)	(2.7)	(3.4)	(9.6)	(1.3)

주: (△) - 2012년 대비 비중 변화.

[그림 5] 2017년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권별 비중 – 산업

8) <표 13>의 평균 기업부채 비율 41.9%를 고려하면 개인사업자의 2017년 기업대출규모는 340.6조 원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2017~18년 집계치 구간 315조 3천억 원~365조 7천억 원(각 년도 3월 기준) 사이에 위치한다. 다만, 대출유형의 포괄범위 차이로 금융당국의 자영업자 대출규모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주된 차이로는 첫째, 포괄범위가 상이하다. 통계기업등록부상 공동사업자인 경우 부사업자의 부채 누락으로 과소집계될 수 있다. 둘째, 폐업사업자의 대출잔액 집계시점이 상이하다. 개인사업자 부채DB는 기준연도 폐업사업자만 포함된 반면, 금융DB의 대출잔액은 기준년도 이전에 폐업한 경우 대출잔액이 존재하면 포함된다. 이 또한 개인사업자DB 총액의 과소 집계를 유발할 수 있다(빅데이터통계과 내부자료,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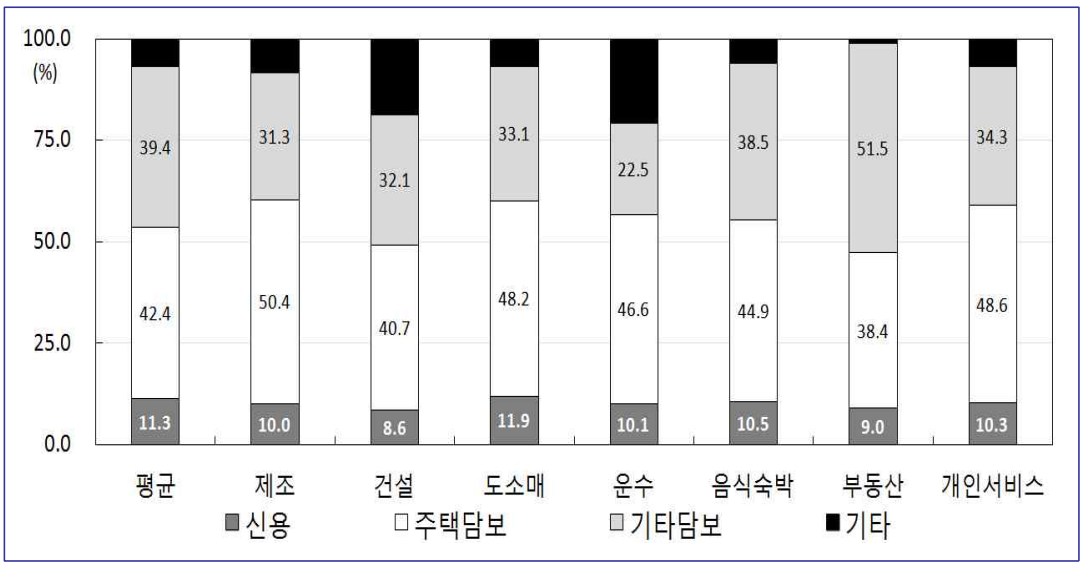

[그림 6] 2017년 개인사업자 가계대출의 대출 종류별 비중 – 산업

<표 14>는 가계/기업대출 등 대출의 종류와 은행/비은행대출 등 업권별 대출 비중을 산업별, 활동여부별, 매출액 구간별, 업력 구간별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산업별로 가계 및 기업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운수업(83.4%), 건설업(70.4%), 도소매업(61.4%)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31.1%)이 가장 낮다. 한편,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운수업이 69.1%로 가장 낮다. 비은행 대출의 산업별 업권 비중을 살펴보면, 건설업(61.4%), 운수업(53.5%)의 비중이 평균을 크게 초과한다. 즉, 이들 산업 내 개인사업자 차주들은 은행권 대출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은행권의 이자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산업 내 차주들의 채무불이행 비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활동여부로 살펴보면, 활동기업은 비활동 기업 또는 폐업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대출총액이 많고, 기업 및 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다. 한편, 매출액이 높을수록 대출총액이 많고, 기업대출 및 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다. 매출액이 높은 이들 개인사업자의 상당수는 제조업 개인사업자일 것이다. 업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년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특성은 대체로 유사하다. 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대출총액(156.0백만 원)이 전체 평균을 하회하고, 가계대출 비중(64.0%)이 다소 높다.

〈표 14〉 가계/신용, 업권별 비중 – 산업·활동여부·매출·업력

		대출총액		가계			기업	은행	비은행
					신용	담보			
		(백만원),	(%)	(%)	(%)	(%)	(%)	(%)	(%)
전체		206.4	(100.0)	58.1	11.3	81.8	41.9	62.6	37.5
산업	제조	286.2	(138.7)	31.1	10.0	81.7	68.9	77.8	22.2
	건설	135.2	(65.5)	70.4	8.6	72.8	29.6	38.5	61.4
	도소매	149.5	(72.4)	61.4	11.9	81.3	38.6	62.6	37.4
	운수	85.3	(41.3)	83.4	10.1	69.1	16.6	46.4	53.5
	음식숙박	157.1	(76.1)	58.2	10.5	83.4	41.8	57.1	42.8
	부동산	375.0	(181.7)	57.6	9.0	89.9	42.4	64.5	35.5
	개인서비스	124.1	(60.1)	61.0	10.3	82.9	39.0	60.5	39.4
	기타	210.7	(102.1)	64.2	18.1	70.0	35.8	62.0	38.0
활동	활동	221.0	(107.1)	54.7	11.0	82.1	45.3	64.4	35.5
	비활동	183.7	(89.0)	76.8	12.0	81.3	23.2	50.9	49.0
	폐업	94.9	(46.0)	83.5	14.0	78.6	16.5	51.4	48.6
매출	5천 이하	139.8	(67.8)	72.7	11.0	84.6	27.3	57.3	42.6
	~1억	169.1	(81.9)	66.5	8.9	79.1	33.5	57.7	42.4
	~3억	212.3	(102.9)	58.1	10.4	81.1	41.9	62.3	37.7
	3억 이상	480.0	(232.6)	36.0	12.8	81.2	64.0	73.1	26.9
업력	1년 미만	156.0	(75.6)	64.0	13.6	77.4	36.0	58.1	41.9
	~3년	205.1	(99.4)	58.0	10.9	77.3	42.0	58.3	41.7
	~5년	205.0	(99.3)	57.0	10.9	82.4	43.0	62.2	37.9
	5년 이상	246.0	(119.2)	51.8	10.6	84.5	48.2	67.8	32.2

주 1. (%)는 전산업 평균 대비 비율이며, 신용(%), 담보(%) 등은 가계대출 대비 비중을 표시.
2. 매출은 활동기업만 해당.

나. 연체

대체로 연체기간이 60~90일을 경과할 경우 대출잔액에 연체 가산금리가 부가되고, 차주의 금융활동(카드 사용 또는 대출) 등은 물론 고용 등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일·진경희, 2018). 또한 금융기관은 원리금을 90일 이상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을 신용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채권으로 간주하고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한다(정호성, 2018). 개인사업자DB 자료에는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30일 이상 또는 90일 이상 초과한 부채보유 개인사업자의 연체특성별 연체액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본고의 연체 분석도 통상 연체를 다룬 연구들에서와 같이 90일 이상 연체 정보를 활용한다.

<표 15>는 2012~17년 기간 중 연도별 연체자 수를 전체, 대출종류별로 집계하고 각 항목의 전체 대비 비중, 즉 연체발생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17년 현재, 부채보유 개인사업자 3,933천 명 중 90일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비중은 2.1%(82천 명)으로 연체자 비중은 지난 5년간 1.0%p 감소했다. 추가로, 가계 및 기업부채 차주의 연체율은 지난 5년간 각각 1.0%p, 0.3%p 감소했다.

〈표 15〉 연도별 연체자수 및 연체율

(단위: 천 명, %)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연체	82	86	97	101	100	102
	(2.1)	(2.3)	(2.6)	(2.8)	(2.9)	(3.1)
	[80.3]	[84.1]	[95.3]	[98.7]	[97.9]	[100]
가계부채	80	85	96	99	98	101
	(2.2)	(2.4)	(2.8)	(3)	(3.1)	(3.2)
	[79.6]	[83.9]	[94.9]	[98.6]	[97.6]	[100]
기업부채	12	11	11	11	13	12
	(0.7)	(0.8)	(0.8)	(0.9)	(1.1)	(1)
	[100]	[92.3]	[92.4]	[96.5]	[109.3]	[100]
부채사업자수	3,933	3,786	3,711	3,563	3,400	3,327
가계부채	3,624	3,505	3,439	3,318	3,172	3,105
기업부채	1,553	1,411	1,340	1,214	1,153	1,142

주: (%) - 항목별 부채(보유) 사업자수 대비 비중(=채무불이행률), [%] - '12년 대비 비중.

〈표 16〉 연도별, 산업별 연체율

(단위: %, %p)

	2017	(△)	2016	2015	2014	2013	2012
전체	2.1	(-1)	2.3	2.6	2.8	2.9	3.1
농업, 임업 및 어업	1.9	(-1.6)	1.9	2.2	2.6	3	3.5
제조업	2.4	(-0.5)	2.5	2.7	2.8	2.8	2.9
건설업	2.3	(-1.3)	2.5	3.2	3.6	3.6	3.6
도매 및 소매업	2.8	(-1.1)	3.1	3.6	3.8	3.8	3.9
음식·숙박	2.4	(-1.1)	2.5	2.7	2.9	3.2	3.5
부동산·임대업	0.8	(-0.8)	0.9	1.1	1.4	1.5	1.6
개인서비스	2.1	(-1)	2.4	2.6	2.9	3	3.1

산업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도소매업(2.8%), 제조업(2.4%), 음식숙박업(2.4%), 건설업(2.3%) 등이 평균을 소폭 상회한다. 지난 5년간 연체율 변화를 살펴보면(<표 16>), 농림어업과 건설업에서 큰 폭의 감소가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사업자의 연체율 감소폭이 작았다.

3. 정책: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개인사업자DB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자영업자 정책금융 변수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9]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제도는 모두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보증지원 프로그램이다. <표 17>과 <표 18>은 이들 세 제도의 수혜율과 연체율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표 17〉 개인사업자 정책금융 수혜율 및 연체율

(단위: 천 명, %)

	수혜자수	수혜율	연체율
햇살론	49,341	1.3	4.9
새희망홀씨	94,588	2.4	2.6
바꿔드림론	4,146	0.1	3.3

〈표 18〉 개인사업자 정책금융 수혜율 및 연체율 – 산업별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연체율		연체율		연체율
제조업	0.8	4.9	2.4	2.6	0.1	6.1
건설업	1.3	4	2.2	2.4	0.1	1.7
도소매	1.7	5.5	3.2	2.9	0.2	2.8
운수	1.3	3.7	2.5	1.9	0.1	2.9
음식, 숙박	1.7	5.5	3	2.7	0.1	4.1
부동산, 임대	0.3	2.4	0.7	1.5	0	1.9
협회, 단체, 개인서비스	1.7	4.6	3	2.4	0.1	2.6

9) 제도의 상세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4. 가계부채: 자영업자 가구와 비자영업자 가구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자영업자 가구와 비자영업자 가구의 부채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표 19>는 자영업자 가구와 비자영업자 가구의 재무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석에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부채, 소득, 자산 항목의 평균치는 부채가 존재하는 가구에 한정해 계상했다. 예를 들어, 전체가구의 평균 부채 11,179만 원은 부채가 존재하는 12,360천 개 가구의 평균 부채이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19,463천 개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중은 63.5%이며 이들의 평균 부채 규모는 약 1억 1,179만 원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전체가구의 27.4%인 5,340천 개이며, 이들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73.3%로 전체가구의 부채보유 여부보다 약 9.8%p 높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권리, 즉 경제적 자원을 소유해야 한다. 경제적 자원은 자기자본 또는 채권자를 통해 발생시키는 부채를 통해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임금근로자 가구 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취업행위를 하지 않는 기타 가구와 비교하여 더 많은 비중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할 수 있다.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자 가구는 부채뿐만 아니라 소득, 자산 측면 모두에서 비자영업자 가구 또는 임금근로자 가구의 해당 값을 상회한다. 자산(약 5.9억), 부채(약 1.4억)는 전체 평균보다 각각 24.1%, 29.6% 많고, 평균 소득은 전체 평균보다 13.5% 많은 7,193만 원이다. 소득출처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 비중(63.3%)이 높다.

<표 19>의 하단에는 부채보유 가구 중 연체(delinquency) 또는 채무불이행(default)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자가구 3,912천 개 중 30일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4.1%이다. 30일 이상 연체가구의 비중은 기타가구(가구 내에 자영업자 또는 임금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하고 대체로 유사하다. 즉, 해당 결과만으로는 자영업자가구와 비자영업자 가구 사이에 채무불이행 발생 비율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영업자 가구는 비자영업자 가구와 비교하면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중이 더 높다. 또한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는 비자영업자 가구보다 부채, 소득, 자산 모든 측면에서 더 큰 평균값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채무불이행 발생 여부는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구의 채무불이행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여부 또는 종사상 지위 외에도 많이 존재할 수 있다.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와 채무불이행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채무불이행 발생에 관한 간단한 경제적 모형을 소개하고 함께 개인사업자DB 및 가금복 자료

를 활용해 구한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표 19〉 자영업자가구와 비자영업자 가구의 재무상태 비교

(단위: 천 개, 만 원, %)

	단위	전체가구	자영업자	비자영업자	임금근로	기타
전체가구 수	천개	19,463	5,340	14,124	10,454	3,670
		(100)	(27.4)	(72.6)	(53.7)	(18.9)
부채보유 가구수	천개	12,360	3,912	8,448	7,052	1,395
		[63.5]	[73.3]	[59.8]	[67.5]	[38]
부채/자산	(%)	23.6	24.7	22.9	24.1	18.0
평균 부채	만원	11,179	14,492	9,645	9,797	8,879
		(100)	(129.6)	(86.3)	(87.6)	(79.4)
① 금융부채	(%)	71.0	76.6	67.1	70.5	48.2
- 담보대출	(%)	57.3	61.7	54.3	56.6	41.6
- 신용대출	(%)	9.6	10.2	9.1	10.1	3.4
② 임대보증금	(%)	29.0	23.4	32.9	29.4	51.8
평균 소득	만원	6,336	7,193	5,939	6,472	3,249
		(100)	(113.5)	(93.7)	(102.1)	(51.3)
① 근로소득	(%)	63.1	25.6	84.1	88.8	37.3
② 사업소득	(%)	24.7	63.3	3.1	3.0	4.9
③ 재산소득	(%)	6.8	7.2	6.5	4.7	25.1
④ 이전소득	(%)	5.4	3.9	6.2	3.6	32.7
평균 자산	만원	47,340	58,743	42,060	40,632	49,257
		(100)	(124.1)	(88.8)	(85.8)	(104)
① 금융자산	(%)	23.2	20.6	24.8	26.8	16.5
② 실물자산	(%)	76.8	79.4	75.2	73.2	83.5
- 부동산	(%)	72.0	71.6	72.3	69.9	82.3
- 기타 실물자산	(%)	4.8	7.7	2.9	3.3	1.3
원리금 연체 가구 비중	(%)	9.1	10.7	8.3	8	9.7
30일 이상 연체 가구 비중	(%)	4.1	4.1	4.0	3.6	6.2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주: 1. (%) - column percent, [%] - row percent.

2. 부채, 소득, 자산은 부채를 보유한 가구에 한정하여 계상.

제4장 개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 결정요인

1. 선행연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부실위험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동걸 외, 2014; 김영일·진경희, 2018). 금융위기 이전 연구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개인단위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차주 개인의 재무적 상태는 물론,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채무불이행 위험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다룬 최근 연구들을 차례로 소개한다.

미시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 연구 중 비교적 초기 연구인 유경원(2009)은 가계자산조사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다. 유경원(2009)은 부채의 크기가 부동산 구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채규모가 큰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규모가 작아 유동성 측면의 재무건전성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이고 총량수준의 가계부채 건전성(자산 대비 부채)과 위험성을 강조했다. 정호성(2017)은 한국은행 가계부채DB를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의 부도가 금리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용평가자료(CB자료)를 활용해 가계부채 부실위험을 평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Kim et al, 2016; 이동걸 외, 2014; 김영일·변동준, 2012, 함준호 외, 2010). 이 중 이동걸 외(2014)는 채무불이행 요인으로 차주의 신용등급, DSR(debt service ratio), 비은행권 대출 비중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일·진경희(2018)는 개인신용 측면 정보 중심의 CB자료에 통계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기업체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김영일·진경희(2018)는 생애주기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노출정도, 충격 흡수 대응수단 그리고 금융이해·판단력 등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 부채는 가계부채의 성격과 기업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김도균, 2015). 기업부채가 기업의 활동, 즉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면, 가계부채는 주로 부동산 구매, 생활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발생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자영업 부채를 가계 부채의 하위 범주로 간주하고 상대적 중요성을 간과한 반면, 김도균(2015)은 자영업 부채 증가가 자영업 부분 경쟁 심화와 사업비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구윤혜·차경욱(2019)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가구 및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분석했다. 자영업

대부분이 생계형 기업이며, 전문성과 수익성이 모두 낮아 높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구윤혜·차경욱, 2019).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로는 정호성(2018)이 있다. 정호성(2018)은 한국은행이 보유한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자영업 차주와 비자영업 차주의 채무불이행 확률에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정호성(2018)은 채무불이행 확률에 미치는 신용등급의 영향이 유의미한 가운데, 그 영향은 자영업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했다.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또한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은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에 대한 가용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추정한 계약 이행확률의 역수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결정요인에 관한 모형 내에서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경우, 내생성(endogeneity)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성지미(2011)는 자영업의 선택이 미취업에 대한 대안적 고용형태이며, 빈곤 탈출을 위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olinge(2014)도 자영업이 경기가 불황일 때 임금근로 일자리의 기회 부족으로 선택하게 되는, 즉 비자발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만약 경제활동을 선택함에 있어서 임금근로와 자영업 간 이질성(heterogeneity)이 존재한다면 선행연구들이 차주의 가구특성과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는 불편성과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와 함께 자영업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를 추가하여 이와 같은 편의 가능성을 일부 보완하고자 한다.

2. 추정량과 자료

가. 추정량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으로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노출정도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수 있다(김영일·진경희, 2018). 충격에 대한 노출 및 흡수여력의 부족 정도에 관한 가구의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고용 특성, 주거특성, 재무적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가구원 수, 가구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청년기에는 소득수준은 낮을 수 있으나 부양가족, 주택에 대한 수요 등도 낮아 부채규모 또한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이후, 자녀의 양육, 주택규모 확대 등에 따라 부채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장년기에는 자녀의 분가와 은퇴 등에 따라 소비와 주택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은 금

융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득 및 고용특성으로는 소득수준과 종사상지위와 같은 고용특성 등이 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높을수록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높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임금근로자는 미취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채무불이행을 예상할 수 있다.

주거특성으로는 주택의 종류(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와 거주 형태(자가, 전·월세 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구자산의 대부분은 실물자산이며, 실물자산에서 거주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다. 자가의 보유는 자산의 규모와 관련되어 담보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종류는 담보력은 물론, 환금성과도 관련되는데, 아파트는 더 높은 유동성을 제공해 경제적 충격에 대한 더 높은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특성으로는 부채/소득 비율, 신용대출 보유 여부, 비은행 대출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높은 부채/소득 비율은 높은 차입비용과 함께 차입 제약도 커 경제적 충격에 더욱 취약할 것이다(정호성, 2017; 김영일·진경희, 2018, 구윤혜·차경욱, 2019). 은행권 대출에 비해 차입제약은 낮으나 차입비용이 크게 높은 비은행권 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 또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특성들의 영향은 이항종속변수 모형인 로짓(logit)모형을 활용해 추정한다. 종속변수로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1개월 이상의 미상환 여부를 활용한다. 추정량은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y_i = 1$은 가구 i의 연체상태를 나타내며, 설명변수 벡터인 x_i는 가구 i의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산업(자영자)을 포함해 인구·가구 및 소득 특성, 주거 특성, 재무적 특성 등을 통제한다.

$$\Pr(y_i = 1|x_i) = \Lambda(x_i\beta) = 1/(1+e^{-x_i\beta}),\ where\ x_i\beta = \beta_0 + \beta_1 x_{i,1} + \cdots \beta_n x_{i,n}$$

추정 자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통계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18년 자료와 임찬수(2019)가 구축한 대외 서비스용 개인사업자DB 표본자료를 각각 활용한다.[10]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경우 지금까지 설명한 대부분의 가구특성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대외 서비스용 개인사업자DB의 경우 개인사업자만을 모집단으로 다루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 가구 특성 정보를 대부분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10) 대외 서비스용 개인사업자DB 표본자료와 관련해서는 임찬수(2019)를 참고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등록센서스와 주택소유통계 등을 통한 가구특성이 보완되면 추정치가 가질 수 있는 편의는 일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현편, 대외제공용 개인사업자DB가 패널자료로 추출된다면 부수적 모수(incidental parameters or group effect)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문에는 금융부채가 존재하는 가구에 대해서 대출상환이 30일 이상 연체된 가구의 정보가 존재한다. 이 연체가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요인들이 채무불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로짓모형 추정결과에 앞서, <표 19>에는 추정에 활용된 요인들의 2017년 특성을 부채를 보유한 가구 전체, 연체(채무불이행)가구, 비연체가구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전체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18명이고, 40세 미만 가구주는 19.9%이며, 중년(40~50대) 및 노년(6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각각 59.1%, 20.9%이다. 여성 가구주는 16.7%이며,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는 78.7%,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가구주는 4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 및 주택 특성의 경우, 거주주택이 자가인 가구의 비중은 64.9%이고, 아파트에 거주 중인 가구비중이 58.6%, 수도권에 거주 중인 가구가 50.9%로 나타났다.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12.9%이며 신용대출보유가구는 35.2%이고, 금융부채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 154만 원, 실물자산은 3억 3,429만 원, 금융부채는 8,927만 원인 이다. 소득·고용 특성변수의 경우, 먼저 소득수준에 따른 분류를 보면 저소득 가구 10.6%, 중간소득층 가구는 65.8%, 고소득 가구는 23.6%의 비중 분포를 보이고 있고, 가구주의 고용특성을 보기 위한 종사상지위 측면에서는 미취업가구가 10.3%, 임금근로자가구가 61.4%, 자영업 가구가 2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특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가구의 산업분포를 4개의 범주로 분류했다. 자영업가구에 해당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체 금융부채가구의 4.3%, 제조업 종사가구는 2.7%, 서비스업 종사가구는 19.1%, 그 외 기타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2.1%의 비중을 차지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다양한 산업범주를 고려하여 대표적인 서비스산업들을 구분해 살펴보았다. 자영업자이면서 도소매업 종사가구는 전체 금융부채가구의 5.0%, 운수업 종사가구는 3.6%, 음식숙박업 종사가구는 3.6%, 부동산 임대업 종사가구는 0.7%, 그 외 서비스(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산업) 종사가구가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기술통계량 -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단 위)	금융부채가구		연체가구		비연체가구	
가구원 수	(명)	3.178	(1.23)	2.922	(1.38)	3.190	(1.22)
청년 가구주 가구(40세 미만)	(=1)	0.199	(0.4)	0.085	(0.28)	0.205	(0.4)
중년 가구주 가구(40대, 50대)	(=1)	0.591	(0.49)	0.708	(0.46)	0.586	(0.49)
노년 가구주 가구(60세 이상)	(=1)	0.209	(0.41)	0.207	(0.41)	0.209	(0.41)
여성 가구주	(=1)	0.167	(0.37)	0.258	(0.44)	0.163	(0.37)
배우자 존재	(=1)	0.787	(0.41)	0.603	(0.49)	0.796	(0.4)
대졸 이상 가구주	(=1)	0.453	(0.5)	0.226	(0.42)	0.463	(0.5)
저소득 가구	(=1)	0.106	(0.31)	0.279	(0.45)	0.097	(0.3)
중소득 가구	(=1)	0.658	(0.47)	0.610	(0.49)	0.660	(0.47)
고소득 가구	(=1)	0.236	(0.42)	0.110	(0.31)	0.242	(0.43)
거주지 자가보유	(=1)	0.649	(0.48)	0.391	(0.49)	0.661	(0.47)
거주지 아파트	(=1)	0.586	(0.49)	0.425	(0.5)	0.593	(0.49)
거주지 수도권	(=1)	0.509	(0.5)	0.529	(0.5)	0.508	(0.5)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보유	(=1)	0.129	(0.33)	0.195	(0.4)	0.125	(0.33)
신용대출보유가구	(=1)	0.352	(0.48)	0.478	(0.5)	0.346	(0.48)
금융자산	(만 원)	10,154		5,113		10,395	
실물자산	(만 원)	33,429		22,195		33,964	
금융부채	(만 원)	8,927		10,108		8,870	
미취업가구	(=1)	0.103	(0.3)	0.188	(0.39)	0.099	(0.3)
임금근로자가구	(=1)	0.614	(0.49)	0.535	(0.5)	0.618	(0.49)
자영업	(=1)	0.283	(0.45)	0.277	(0.45)	0.283	(0.45)
자영업 & 농림어업	(=1)	0.043	(0.2)	0.050	(0.22)	0.043	(0.2)
자영업 & 제조업	(=1)	0.027	(0.16)	0.020	(0.14)	0.027	(0.16)
자영업 & 기타산업	(=1)	0.021	(0.14)	0.027	(0.16)	0.021	(0.14)
자영업 & 서비스업	(=1)	0.191	(0.39)	0.180	(0.39)	0.191	(0.39)
자영업 & 서비스(도소매)	(=1)	0.050	(0.22)	0.036	(0.19)	0.051	(0.22)
자영업 & 서비스(운수)	(=1)	0.036	(0.19)	0.044	(0.2)	0.035	(0.18)
자영업 & 서비스(음식숙박)	(=1)	0.036	(0.19)	0.064	(0.24)	0.035	(0.18)
자영업 & 서비스(부동산임대)	(=1)	0.007	(0.08)	0.006	(0.07)	0.007	(0.08)
자영업 & 서비스 (그 외 서비스)	(=1)	0.063	(0.24)	0.032	(0.18)	0.064	(0.24)
관측치 수 (가중치 적용)	(천 개)		11,088		505		10,583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문.

주: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

이상을 통해 채무불이행 가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채무불이행 가구는 가구주의 대졸 이상 학력비중이 작고,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거주지 자가보유 비율이 낮다. 재무적 특성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대출보유가구 비율이 높으며 평균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은 작고, 금융부채는 크다. 종사상 특성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미취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 자료 - 개인사업자DB 표본

상기한 연체확률모형 추정에 사용된 모든 변수에 대해 값을 갖는 표본의 주요 요약통계량은 <표 21>과 같다. 여기서는 연체(default) 사업자와 무연체(non-default) 사업자 간 개인특성, 부채특성, 기업특성 등 모든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전체 자료를 살펴보면, 차주의 2.8%가 부도(채무불이행)를 겪고 있다. 차주의 63%가 남성이며, 평균 연령과 수도권 거주여부는 각각 49세, 46%이다. 성별, 연령, 수도권 거주여부 비중은 연체 및 무연체 사업주 간 눈에 띄는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대출 총액을 살펴보면 무연체자의 대출총액은 연체자 보다 약 70% 더 많다. 기업대출 비중은 연체자(19.0%)가, 담보대출비율은 무연체 사업자(47.6%)가 월등히 높다. 다중채무 정도를 의미하는 대출 건수의 경우 연체 사업자가 더 높았다. 총부채상환비율[11] 또한 두 집단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연체 사업자의 DTI가 약 33%인 반면, 연체자는 200%가 넘는 높은 수준(약 235%)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특성을 살펴보면, 연체 사업자는 비활동 또는 폐업 비율이 더 높고 매출액, 종사자수, 업력 등 모든 특성에서 무연체 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연체자 발생 비율이 다소 높다. 5개년 자료 중 연도별 표본비중을 살펴보면 부채보유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으나('12년 18.8% → '16년, 21.1%), 연체자의 발생 비율은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연체자 중 비중: '12년, 21.5% → '14년, 21.1% → '16년, 17.1%).

---

11)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 이자상환액)/연소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한 것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DTI가 50%이고 연 소득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의 50%인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표 21〉 기술통계량 – 개인사업자DB 2012~16년

		(단위)	전체		연체=0		연체=1	
			(mean)	(s.d.)	(mean)	(s.d.)	(mean)	(s.d.)
연체		(연체=1)	0.028	0.37	0.00	–	1.00	–
개인특성	남성	(남성=1)	0.63	1.08	0.63	1.08	0.67	1.05
	연령	(세)	49	25	49	25	46	23
	수도권	(=1)	0.46	1.11	0.46	1.11	0.47	1.12
부채특성	대출총액	(백만원)	168	1,176	**170**	1,172	**104**	1,307
	기업대출비율	(%)	14.05	59.90	**13.91**	59.68	**19.04**	66.21
	담보대출비율	(%)	46.81	96.29	**47.61**	96.21	**18.93**	76.05
	대출건수	(개)	2.50	4.44	**2.48**	4.41	**3.01**	5.16
	DTI	(%)	0.39	2.06	**0.33**	1.49	**2.35**	7.48
기업특성	활동여부	(=1)	0.86	0.78	**0.87**	0.76	**0.54**	1.12
	매출액	(백만원)	211	2,344	**212**	2,359	**125**	1,185
	종사자수	(명)	0.73	9.14	**0.75**	9.24	**0.20**	4.19
	업력	(년)	6.97	23.53	**7.02**	23.78	**5.12**	11.52
산업	제조업		0.08		0.08		0.08	
	건설업		0.06		0.06		0.07	
	도소매		**0.25**		**0.25**		**0.34**	
	운수		0.10		0.10		0.06	
	음식,숙박		**0.14**		**0.14**		**0.16**	
	부동산임대		**0.18**		**0.18**		**0.09**	
	개인서비스		0.05		0.05		0.05	
	기타		0.13		0.13		0.14	
연도	2012		0.188		0.188		0.215	
	2013		0.192		0.192		0.207	
	2014		0.201		0.201		0.211	
	2015		0.207		0.207		0.197	
	2016		0.211		0.213		0.171	
관측치수		(천개)	3,294		3,203		91	

3. 추정결과

가.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22>는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표이다. 추정치($\hat{\beta}_i$)는 로그-승산비(log odds ratio)를 나타낸다. 모형 1은 전체금융부채가구를 대상으로 인구·가구, 소득·고용, 주택·거주, 취업 특성의 변수를 구성하여 채무불이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2는 모형 1의 자영업가구 변수 대신에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을 분해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즉, 임금근로자 가구와 비교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자영업자의 산업별로 상이한지 관찰한다. 모형 3은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자영업가구 종사비율이 높은 서비스업 중 대표적인 산업인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한 후, 이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채무불이행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원이 1명 증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한계소득효과보다 한계지출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이 증가하는 것은 부양가족(자녀, 노부모 등)이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가구주 세대측면에서는 중년 가구주의 가구가 청년 및 노년 가구주의 가구보다 더 연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및 50대 가구주의 가구가 자녀부양 등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시기인 동시에 은퇴 및 조기퇴직 등의 위험에 직면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에서 연체위험이 낮아지는 점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며, 배우자가 존재할 때 소득창출 가능성이 더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연체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교육수준과 금융이해 및 판단력이 정(+)의 상관을 갖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선행연구의 추정치와 유사하다(김영일·진경희, 2018).

거주지 특성변수의 경우, 거주지가 자가이거나 아파트에 거주할 때 연체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이 자가 소유인 경우 전세나 월세거주보다 상대적으로 자산 안정성이 있고, 아파트의 경우 환금성이 높아 재정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재무적 특성변수를 보면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보유가 있으면 연체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은행권 대출에 비해 높은 대출비용 등 차입제약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신용대출 또한 비은행금융기관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 미취업가구와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연체위험이 높다. 정기적 소득이 부재하는 미취업가구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 소득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자영업의 특성상,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2〉 채무불이행 확률모형 추정결과- 가계금융복지조사

	모형 1.	모형 2.	모형 3.
가구원 수	0.13***	0.13***	−0.08***
청년 가구주 가구(40세 미만)	−0.64***	−0.64***	−1.31***
노년 가구주 가구(60세 이상)	−0.25***	−0.25***	−0.55***
여성 가구주	−0.38***	−0.37***	−0.49***
배우자 존재	−0.64***	−0.64***	−0.29***
대졸이상 가구주	−0.67***	−0.67***	−0.38***
저소득 가구	0.60***	0.61***	0.05***
고소득 가구	−0.43***	−0.44***	−0.33***
거주지 자가보유	−0.64***	−0.63***	−0.75***
거주지 아파트	−0.16***	−0.16***	0.24***
거주지 수도권	0.17***	0.18***	0.52***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보유	0.48***	0.48***	0.75***
신용대출보유가구	0.53***	0.53***	0.26***
금융부채/금융자산	0.00***	0.00***	0.01***
금융부채/실물자산	0.01***	0.01***	0.00***
미취업가구	0.10***	0.09***	
자영업	0.30***		
자영업 & 농림어업		0.29***	
자영업 & 제조업		0.10***	−0.42***
자영업 & 기타산업		0.57***	−0.01
자영업 & 서비스업		0.29***	
자영업 & 서비스(도소매업)			−0.50***
자영업 & 서비스(운수업)			−0.20***
자영업 & 서비스(음식숙박업)			0.38***
자영업 & 서비스(부동산임대업)			0.14***
자영업 & 서비스(그 외 서비스)			−0.66***
2018년	0.26***	0.26***	0.17***
No. of Obs(thousands)	20,316	20,316	6,055
$Pseudo\,R^2$	8.02%	8.06%	8.90%

주: *** p<0.01, ** p<0.05, * p<0.1

모형 2에서 기초 설명변수들이 채무불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1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된 자영업자의 산업분류 영향을 살펴보면, 자영업 중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그 외 기타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모두,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연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 가구주의 종사산업이 다르더라도 상대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로 인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예상하는 미래소득이 현재 기대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모형 3은 자영업 가구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서비스업을 더 세분화해서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농림어업 종사가구와 비교할 때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연체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사산업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보다 농업, 어업이 짧은 시간에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산업 내 경쟁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서 발생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음식숙박업 종사 시, 본인 소유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임대계약 갱신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부동산시장 경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일정기간 소득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가구재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고는 30일 이상 연체경험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본고의 추정치를 가계의 경제적 또는 재무적 위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함의로 이해할 수는 없다. 다만, 앞에서 다양한 개인 및 가구특성의 변화가 단기 채무불이행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기변동과 경쟁에 노출되있는 자영업자는 안정적 소득창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

나. 개인사업자DB

<표 23>은 2012~16년 기간 개인사업자D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개인 및 기업특성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전체자료를 활용한 추정치(자료 1.)와 활동기업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자료 2.)도 함께 제시한다.

먼저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앞선 가금복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와 대체로 유사하다. 남성 개인사업자의 연체위험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체위험과 연령은 비선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의 증가는 연체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제곱항을 고려하면 연체위험을 높이는 폭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줄어든다. 다만, 활동기업에 한정할 경우, 연령의 증가는 연체위험을 체증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장 위치가 연체위험에 미치는 결과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개인사업자가 더 높은 연체위험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개인특성에 관한 추정치는 종속변수를 가계부채에 대한 연체(model 2.) 또는 기업부채에 대한 연체(model 3.)로 한정해도 유사하다.

부채특성과 관련하여, 대출총액이 증가할수록 연체위험은 감소한다. 다만, 기업부채에 대한 연체에 한정해 고려할 경우 유의미하지 않다. 사전적 예상과 다르게 기업대출비율과 연체확률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통상 기업대출 이자율은 가계대출 이자율 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상환·김홍기, 2016).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승인받아야 하며, 신용보증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증빙이 요구된다.[12] 즉, 낮은 금리의 기업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가계대출을 이용 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정상적이고 양호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수 있고 이들의 연체위험은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할 경우, 기업대출비율과 연체위험과는 부(-)의 관계가 예상된다.

한편, 담보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연체위험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자산의 규모에 관한 이론적 예상에도 부합한다. 총부채상환비율의 추정치도 예상에 부합한다. 총부채상환비율, 즉 소득대비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 이자상환액 포함) 비중이 커질수록 연체위험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특성과 관련하여, 활동 중인 개인사업자는 비활동 사업자나 폐업자보다 연체확률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료 2.의 추정 결과에서, 매출액의 증가도 연체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사자수와 업력의 증가는 유의하게 연체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기업부채의 연체위험에 관해서 업력의 증가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제조업과 비교한 업종별 연체 확률의 경우,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들은 제조업에 비해 더 낮은 연체위험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2년과 비교한 시점별 연체위험의 경우, 평균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

12) 소상공인 대출은 통상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선다. 신용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전년도 신고 매출액이 필요하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는 신용보증서 외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수입금액 증명원(세무서), 올해 매출자료(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 합계표), 신용보증결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표 23〉 채무불이행 확률모형 추정결과 – 개인사업자DB – 전체기업, 활동기업

		자료 1. (전체 자료)			자료 2. (활동사업자)
		model 1. 전체 연체	model 2. 가계부채	model 3. 기업부채	model 1. 전체 연체
개인특성	남성	0.397***	0.4***	0.2***	0.342***
	연령	0.056***	0.056***	0.068***	0.044***
	연령^2	−0.001***	−0.001***	−0.001***	0***
	수도권	0.061***	0.059***	0.198***	0.092***
부채특성	대출총액	−0.001***	−0.001***	0	−0.001***
	기업대출비율	0.006***	0.005***	0.039***	0.004***
	담보대출비율	−0.02***	−0.02***	−0.007***	−0.02***
	대출건수	0.028***	0.027***	0.077***	0.06***
	DTI	0.657***	0.656***	0.482***	0.666***
기업특성	활동여부	−1.835***	−1.842***	−1.086***	
	매출액				−0.001***
	종사자수	−0.162***	−0.166***	−0.146***	−0.081***
	업력	−0.001***	−0.001***	0***	−0.024***
산업 (base=제조업)	건설업	−0.16***	−0.157***	−0.183***	−0.308***
	도소매	−0.133***	−0.135***	−0.27***	−0.174***
	운수	−0.567***	−0.569***	−0.228***	−0.758***
	음식,숙박	0.036***	0.036***	−0.006	−0.209***
	부동산임대	−0.929***	−0.922***	−1.251***	−0.866***
	개인서비스	−0.149***	−0.158***	−0.19***	−0.275***
	기타	−0.346***	−0.35***	−0.175***	−0.338***
연도더미	(base=2012년)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o. of Obs(thousands)		16,471	16,471	16,471	14,111
$Pseudo\,R^2$		0.312	0.310	0.059	0.191

주: *** p<0.01, ** p<0.05, * p<0.1

<표 24>는 연체위험 추정 모형을 산업별 자료에 대해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관찰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산업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산업별 추정을 실시했는데, 추정결과는 <표 23>의 활동기업 추정치와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다른 산업과 다르게, 부동산임대업 내 개인사업자의 연령 증가는 연체위험이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부동산임대업 내 차주들의 기업대출 비중 증가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타 부채특성들은 이전의 결과들이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특성

과 관련하여,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증가는 평균적으로 연체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사자수와 업력의 경우 이전의 결과들과 유사하다.

〈표 24〉 채무불이행 확률모형 추정결과 – 개인사업자DB – 산업별 추정치

		제조업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임대	개인서비스
개인특성	남성	0.204***	0.415***	0.325***	0.346***	0.536***	0.304***
	연령	0.023***	0.036***	0.035***	0.023***	0.116***	0.024***
	연령^2	0***	0***	0***	0***	−0.001***	0**
	수도권	0.125***	0.32***	0.134***	0.034***	0.084***	0.093***
부채특성	대출총액	−0.001***	−0.001***	−0.001***	−0.001***	0***	−0.001***
	기업대출비율	0.005***	0.006***	0.006***	0.005***	−0.004***	0.006***
	담보대출비율	−0.021***	−0.014***	−0.02***	−0.019***	−0.024***	−0.021***
	대출건수	0.08***	0	0.083***	0.075***	0.009***	0.091***
	DTI	0.693***	0.619***	0.668***	0.664***	0.666***	0.716***
기업특성	매출액	0***	−0.001***	−0.001***	−0.004***	0***	−0.003***
	종사자수	−0.124***	−0.078***	−0.372***	−0.135***	−0.004	0.007
	업력	−0.029***	−0.06***	−0.022***	−0.01***	−0.018***	−0.021***
연도더미	(base='12년)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o. of Obs(thousands)		1,195	933	3,540	2,205	2,153	768
$Pseudo\,R^2$		0.209	0.183	0.230	0.230	0.097	0.202

주: *** p<0.01, ** p<0.05, * p<0.1

제5장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으로 개발 중인 개인사업자 부채DB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부채 및 채무불이행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에는 2012~17년 기간에 대한 개인사업자DB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5년간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부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증가와 함께, 기업 및 비은행 대출 비중이 확대되었다. 개인사업자의 지난 5년간 부채총액 증가는 평균 부채 규모가 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증가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추가로 지난 5년간 채무불이행 발생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산업별 발생률 변화는 상이하다.

채무불이행 결정요인에 관한 모형분석 결과, 고용, 자산, 소득 등 경제·재무적 요인 외에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종사상 지위, 산업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표될 개인사업자DB 및 대외제공용 개인사업자DB를 활용하면 기존 자료가 포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또는 자영업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사업자(또는 사업체) 특성을 고려한 금융활동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행정행위의 결과를 원자료로 활용하는 통계기업등록부의 특성상 자료의 활용 시기를 기준으로 2년($t-2$)의 시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자료의 시의성에 관한 문제제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DB는 금융업계 자료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및 가계부채DB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부채통계 자료 등의 보완적 자료로서 활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마지막으로 데이터 3법[13]의 영향으로 통계청과 KCB의 자료 간 개인연결 과정에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법 개정과 무관하게 개인연계 키를 보완하는 등 담당부서의 자체적 자료연계(data linkage) 방안 개선도 요구된다.

---

13) 신용정보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참고문헌

구윤혜・차경욱.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취약성 분석". 『소비자학연구』. 30(5), 한국소비자학회.

권태구(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종단분석 연구”. mimeo. 통계개발원.

김상환・김홍기(2016).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제도: 현황과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22(3), 한국금융연구원.

김서영(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바로알기”. KOSTAT 통계플러스 2016-여름호. 통계청.

김영일・진경희(2018). “가계 채무불이행 위험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금융연구』. 32(2), 한국금융학회.

김일광(2018). “우리나라 자영업 업체 현황과 재무특성에 관한 연구 - 산업별 비중 및 창·폐업, 생존기간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1(3).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서정호・이규복・이기혁(2019).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KIF VIP리포트 2019-07. 한국금융연구원.

성지미 (2011)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경력초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 『노동정책연구』. 11(3), 한국노동연구원.

유경원(2009).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분석: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15(4), 한국은행.

유경원,・황진태(2017). “우리나라 가계의 동태적 부채보유 행태에 대한 분석”. 『통계연구』. 22(4), 통계청.

이동걸・전성인・정재욱・변동준(2014).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연체결정요인 및 취약성 연구”. 『금융연구』. 28(2), 금융연구원.

임찬수(2019). “대외 서비스용 개인사업자(기업) DB 표본 설계방안 연구”. mimeo. 통계개발원.

정호성(2017).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 경제분석, 23(2), 한국은행.

정호성(2018),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BOK 경제연구 제2018-5호. 한국은행.

지은정(2012). “경기변동이 자영업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 『사회복지연구』. 43(2),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통계개발원(2015). “가계금융·복지조사 종단면 기초분석보고서”.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청(2012).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_____(2017).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침서”. 통계청.

Kim, Y. I., Kim, H. C., Yoo, J. H.(2016). Household over-indebtedness and financial vulnerability in Korea: evidence from credit bureau data,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8(3), 53-77.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olinge, H.(2014). “Who opts for self-employment after retirement? a longitudinal study in the Netherlands”, European Journal of Ageing, 11. 261-272.

<부 록>

1. 개인사업자 vs 자영업자 vs 소상공인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 개인사업자

○ 국세청(세법)에서는 사업주체별 형태에 따라 사업자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

구분	정의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없고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여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제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제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의미하는데,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를 다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분류

– 일반사업자는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개인사업자

– 간이사업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

○ 세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내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용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1년 이내)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익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내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중과세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	세율: 6%~45%로 누진적용 주민세: 소득세의 10%	세율: 10%~22% 주민세: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대차대조표의 공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	사업소득에서 제외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포함)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고정자산 처분손익	사업소득에서 제외 (양도세에서 과세)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대손충당금	정상적인 영업거래 채권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인정	정상적인 영업거래 발생한 채권이 아니더라도 손금 설정가능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	총수입금액불산입	익금불산입
유가증권 및 고정자산처분손익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불산입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생산설비의 폐기 손실	(장부가-추분가)를 필요경비로 인정	(장부가-1,000원)을 손금인정
대표자, 사업주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 충당금	급여: 필요경비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불가능	급여: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설정 가능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총수입금액에 산입(원가는 필요경비)	규정없음
가사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없음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 계산	출자금=자산 - 부채 - 초과인출금 사업주의 인출금과 가지급금은 자산에서 제외, 가수금은 부채에서 제외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소득처분	세금조정금액이 외부로 유출: 소득으로 추분하지 않음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 실무상 유보처분해 관리	세무조정금액이 외부로 유출: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 - 소득세 납세의무 유발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
비임금근로자의 적용	**해당**	**비해당**

자료: 고용노동부(2011)

□ 자영업자(통계청)

○ 자영업자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의 하나

○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취업자를 임금/비임금근로자로 구분,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자영

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

○ 비임금근로자: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의 이윤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 구분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

□ 소상공인(중기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으로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의 그 외 업종 사업자

□ 경제활동인구의 자영업자와 주된 차이 요인[1)]

○ 임금근로자 중 ① 부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또는 ②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차이 발생

① 주업이 임금근로자이나 부업으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할 경우: 경활은 임금근로자, 개인기업 부채DB는 개인기업으로 포착(+)

② 임금근로자 또는 비경이 상가 또는 주거용 임차 건물 등을 소유한 경우: 경활은 임금근로자 또는 비경, 개인기업 부채DB는 개인기업으로 포착(+)

2. 정책 변수 설명

□ **(햇살론)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급보증 대출상품**

○ 사업운영자금

–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대출한도: 최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등급에 따라 한도 결정

○ 창업자금

– 대출대상: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또는 무등록·무점포에서 유등록·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 대출한도: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 필요한 경우 5천만 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

1)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18 빅데이터통계과)

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

– 보증기간 및 상환: 5년(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금융분할 상환)

○ 사업자 대환자금

–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정상상환 중인 서민들의 고금리 해소를 위한 보증부 대환대출

– 대출대상: 햇살론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대부업체·저축은행·캐피탈사·신용카드사의 연이율 20%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자/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대상채무: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정상상환 중인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

– 대출한도: 3천만 원(원금 기준)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율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일 것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없이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햇살론 생계자금

–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연소득 3천 5백만 원 이하인자/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상기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대출(연 20% 이상)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지원대상: 20% 이상(자영업자의 경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소득 3천 5백만 원 이하(신용등급 무관)

– 특수채무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근로자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 자영업자 5천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바꿔드림론 대상 고금리대출 원금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

–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분(연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60%를 초과하는 분)

– 현재 연체 중인 분, 과거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분

○ 지원내용

– 전환대상채무: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연금리 20% 이상 고금리채무

– 대출금리: 연 6.5~10.5%

– 대출한도: 최대 3천만 원(고금리 대출 원금범위 내)

– 대출기간: 최대 5년(근로자 등), 최대 6년(자영업자)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새희망홀씨)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출상품

○ 지원대상: 연소득 3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및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연 10.5% 이하의 금리,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3. 연계 및 미연계 자료의 특성

□ (BR 기반) 개인사업자 부채 DB의 통계청 SBR과 KCB 부채DB 간 연계는 개인사업자의 성별, 연령, 성명 등이 연계키로 활용되었다.

□ 2019년 6월 현재[2], 두 자료 간 연계율은 <부표 1>와 같다.

○ 2012~17년 전체 개인사업자 약 3,424만여 개 중 미연계 비중은 전체의 7.4%이며 연도별로 5.0~10.0%의 미연계율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이 최저(5.0%), 2012년이 최고 10.0%의 미연계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음

---

2) SBR의 갱신, 연계변수 보강 및 연계방법의 개선 등으로 개인사업자DB는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명시한 시점은 본고의 분석대상이 된 개인사업자DB의 수령 시점을 나타내고 있다.

〈부표 1〉 개인사업자DB 구축 원자료 간 연계율

(단위: 천 개(명), %)

	개인사업자수, (%)		미연계율	[편차]	연계율
전체	34,240	(100)	7.4		92.6
2012	5,452	(15.9)	10.0	[2.7]	90.0
2013	5,462	(16)	7.7	[0.3]	92.3
2014	5,542	(16.2)	5.0	[-2.4]	95.0
2015	5,730	(16.7)	5.5	[-1.8]	94.5
2016	5,920	(17.3)	7.7	[0.4]	92.3
2017	6,130	(17.9)	8.2	[0.9]	91.8

자료: 개인사업자DB 2012~17년 전체 자료.

□ <부표 2>는 지역별 연계율과 미연계율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음

○ 연계율은 강원, 전북, 전남 등이 높고(각각 94.1%, 94.1%, 94.1%), 미연계율은 세종, 경기, 서울 순(각각 11.8%, 7.8%, 7.7%)

〈부표 2〉 개인사업자DB 구축 원자료 간 연계율 – 지역별

(단위: 천 개(명), %)

	개인사업자	(%)	미연계율	[편차]	연계율
전체	34,120		7.07		92.93
서울	7,460	(21.9)	7.74	[0.7]	92
부산	2,302	(6.7)	6.7	[-0.4]	93.3
대구	1,613	(4.7)	6.5	[-0.6]	93.5
인천	1,819	(5.3)	7.22	[0.1]	92.78
광주	905	(2.7)	6.96	[-0.1]	93.04
대전	970	(2.8)	6.38	[-0.7]	93.62
울산	687	(2)	6.51	[-0.6]	93.49
세종	119	(0.3)	11.78	[4.7]	88.22
경기	8,225	(24.1)	7.75	[0.7]	92.25
강원	1,050	(3.1)	5.93	[-1.1]	94.07
충북	1,019	(3)	6.34	[-0.7]	93.66
충남	1,321	(3.9)	6.3	[-0.8]	93.7
전북	1,131	(3.3)	5.86	[-1.2]	94.14
전남	1,145	(3.4)	5.94	[-1.1]	94.06
경북	1,709	(5)	6.38	[-0.7]	93.62
경남	2,187	(6.4)	6.38	[-0.7]	93.62
제주	463	(1.4)	6.64	[-0.4]	93.36

자료: 개인사업자DB 2012~17년 전체 자료.

□ <부표 3>은 주요 산업 및 사업주 개인특성별 연계율과 미연계율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음

〈부표 3〉 개인사업자DB 구축 원자료 간 연계율 – 주요 특성별

(단위: 천 개, %, %p)

		개인 사업자수	(%)	미연계율	[편차]	연계율
	전체	34,120		7.07		92.9
성별	남자	19,930	(58.4)	4.4	[-2.7]	95.6
	여자	14,160	(41.5)	10.7	[3.6]	89.3
연령	30미만	1,390	(4.1)	11.7	[4.6]	88.3
	30-39	5,505	(16.1)	8.8	[1.7]	91.2
	40-49	9,805	(28.7)	7.0	[0]	93.0
	50-59	10,230	(30)	5.6	[-1.5]	94.4
	60 이상	6,996	(20.5)	4.4	[-2.7]	95.6
활동여부	활동	26,540	(77.8)	5.3	[-1.8]	94.7
	비활동	3,976	(11.7)	11.1	[4.1]	88.9
	폐업	3,719	(10.9)	18.3	[11.2]	81.7
업력	1년 미만	5,457	(16)	15.1	[8]	84.9
	1～3년	7,593	(22.3)	10.0	[2.9]	90.1
	3～5년	4,642	(13.6)	5.0	[-2.1]	95.0
	5년+	16,220	(47.5)	3.4	[-3.7]	96.6
종사자	0명	29,500	(86.5)	8.0	[1]	92.0
	1명	1,759	(5.2)	2.6	[-4.5]	97.5
	2～5명	2,003	(5.9)	4.0	[-3.1]	96.0
	5+	977	(2.9)	2.9	[-4.2]	97.1
매출액	5천 이하	15,000	(52.4)	8.0	[0.9]	92.1
	～ 1억	4,481	(15.7)	5.5	[-1.5]	94.5
	～ 3억	5,260	(18.4)	4.2	[-2.9]	95.8
	3억 이상	3,879	(13.6)	2.8	[-4.3]	97.2
주요산업	C	2,395	(7)	3.9	[-3.2]	96.1
	F	1,906	(5.6)	4.9	[-2.2]	95.2
	G	8,556	(25.1)	7.6	[0.6]	92.4
	H	3,268	(9.6)	4.1	[-2.9]	95.9
	I	4,812	(14.1)	8.7	[1.7]	91.3
	L	7,023	(20.6)	9.6	[2.5]	90.4
	S	1,836	(5.4)	6.8	[-0.3]	93.2
	ETC	4,440	(13)	7.5	[0.4]	92.6

자료: 개인사업자DB 2012~17년 전체 자료.

주: C - 제조업, F-건설업, G-도소매, H-운수, I-음식숙박, L-부동산임대, S-협회, 단체, 개인서비스.

○ 여성의 미연계율이 10.7%로 남성의 미연계율을 6.3%p 초과

○ 40대 미만 사업주의 미연계율이 높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미연계율 감소

○ 폐업 및 비활동 개인사업자의 미연계율이 각각 18.3%, 11.1%로 평균을 크게 초과

○ 추가로, 업력이 길수록, 매출액이 많을수록, 미연계율이 낮음

○ 대분류 산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9.6%), 음식숙박업종(8.7%)의 미연계율이 평균을 초과

□ <부표 4>는 소분류 산업별로 연계 및 미연계율을 제시

○ 다만, 전체 대비 비중이 0.1%를 초과하는 산업에 한해 제시

〈부표 4〉 개인사업자DB 구축 원자료 간 연계율 – 소분류 산업별

(단위: 천 개, %, %p)

산업 소분류	개인사업자	(비중)	미연계율	[편차]	연계율
102	19	(0.1)	4.3	[−2.8]	95.7
103	18	(0.1)	6.3	[−0.7]	93.7
106	27	(0.1)	4.6	[−2.5]	95.4
107	205	(0.6)	4.7	[−2.4]	95.3
132	73	(0.2)	3.9	[−3.2]	96.1
134	35	(0.1)	4.8	[−2.3]	95.2
139	18	(0.1)	3.3	[−3.8]	96.7
141	102	(0.3)	6.2	[−0.9]	93.8
144	20	(0.1)	3.7	[−3.4]	96.3
151	23	(0.1)	5.0	[−2.1]	95.0
162	30	(0.1)	3.8	[−3.3]	96.2
172	22	(0.1)	3.2	[−3.9]	96.8
181	129	(0.4)	3.6	[−3.5]	96.4
204	22	(0.1)	6.3	[−0.8]	93.7
222	96	(0.3)	3.0	[−4.1]	97.0
232	18	(0.1)	4.7	[−2.4]	95.3
239	18	(0.1)	3.7	[−3.4]	96.3
241	18	(0.1)	3.0	[−4.0]	97.0
251	94	(0.3)	3.3	[−3.7]	96.7
259	291	(0.9)	2.6	[−4.5]	97.4
261	22	(0.1)	4.0	[−3.1]	96.0
262	38	(0.1)	3.9	[−3.1]	96.1
271	29	(0.1)	2.4	[−4.7]	97.6
272	26	(0.1)	2.7	[−4.4]	97.3
281	62	(0.2)	3.0	[−4.0]	97.0

산업 소분류	개인사업자	(비중)	미연계율	[편차]	연계율
284	29	(0.1)	3.5	[−3.6]	96.5
291	100	(0.3)	3.4	[−3.7]	96.6
292	185	(0.5)	3.1	[−3.9]	96.9
303	49	(0.1)	3.9	[−3.2]	96.1
311	25	(0.1)	4.9	[−2.2]	95.2
320	80	(0.2)	3.6	[−3.5]	96.4
339	182	(0.5)	4.6	[−2.5]	95.4
351	**73**	**(0.2)**	**12.3**	**[5.2]**	**87.7**
411	91	(0.3)	7.4	[0.3]	92.6
412	59	(0.2)	4.6	[−2.4]	95.4
421	154	(0.5)	4.4	[−2.7]	95.6
422	147	(0.4)	3.5	[−3.6]	96.5
423	72	(0.2)	3.8	[−3.3]	96.2
424	459	(1.3)	5.1	[−2.0]	94.9
425	896	(2.6)	4.8	[−2.3]	95.2
451	**55**	**(0.2)**	**12.9**	**[5.8]**	**87.1**
452	129	(0.4)	4.3	[−2.8]	95.7
461	**187**	**(0.5)**	**11.6**	**[4.6]**	**88.4**
462	119	(0.3)	5.9	[−1.2]	94.1
463	596	(1.7)	5.3	[−1.8]	94.7
464	590	(1.7)	7.7	[0.7]	92.3
465	448	(1.3)	4.8	[−2.3]	95.2
466	229	(0.7)	4.1	[−3.0]	95.9
467	358	(1.0)	4.6	[−2.4]	95.4
468	**150**	**(0.4)**	**11.3**	**[4.2]**	**88.8**
471	718	(2.1)	6.4	[−0.7]	93.6
472	676	(2.0)	7.4	[0.3]	92.6
473	242	(0.7)	8.1	[1.0]	91.9
474	1,049	(3.1)	9.9	[2.9]	90.1
475	380	(1.1)	4.8	[−2.3]	95.2
476	227	(0.7)	5.9	[−1.2]	94.1
477	112	(0.3)	3.7	[−3.3]	96.3
478	837	(2.5)	6.9	[−0.2]	93.1
479	**1,439**	**(4.2)**	**10.9**	**[3.8]**	**89.1**
492	1,025	(3.0)	0.9	[−6.2]	99.1
493	1,987	(5.8)	5.5	[−1.6]	94.5
494	139	(0.4)	6.1	[−1.0]	93.9
529	94	(0.3)	7.5	[0.4]	92.5
551	249	(0.7)	7.8	[0.8]	92.2
559	**32**	**(0.1)**	**10.0**	**[2.9]**	**90.0**
561	3,268	(9.6)	8.0	[0.9]	92.0
562	**1,263**	**(3.7)**	**10.7**	**[3.7]**	**89.3**
581	70	(0.2)	6.6	[−0.5]	93.4

산업 소분류	개인사업자	(비중)	미연계율	[편차]	연계율
582	93	(0.3)	6.5	[−0.6]	93.6
591	42	(0.1)	6.5	[−0.5]	93.5
620	74	(0.2)	6.1	[−0.9]	93.9
639	23	(0.1)	9.7	[2.6]	90.3
649	34	(0.1)	9.3	[2.3]	90.7
661	22	(0.1)	11.1	[4.1]	88.9
662	157	(0.5)	7.6	[0.5]	92.4
681	6,344	(18.6)	9.8	[2.7]	90.2
682	607	(1.8)	8.1	[1.1]	91.9
692	41	(0.1)	9.4	[2.3]	90.6
693	28	(0.1)	4.4	[−2.6]	95.6
711	82	(0.2)	2.7	[−4.3]	97.3
712	57	(0.2)	1.4	[−5.7]	98.7
713	122	(0.4)	6.9	[−0.2]	93.1
715	62	(0.2)	9.1	[2.0]	91.0
721	124	(0.4)	3.2	[−3.9]	96.8
729	39	(0.1)	4.4	[−2.7]	95.6
731	23	(0.1)	2.9	[−4.1]	97.1
732	59	(0.2)	8.0	[0.9]	92.0
733	78	(0.2)	5.0	[−2.1]	95.0
739	58	(0.2)	8.5	[1.4]	91.5
742	69	(0.2)	5.4	[−1.7]	94.6
751	69	(0.2)	7.9	[0.9]	92.1
752	25	(0.1)	7.7	[0.6]	92.3
759	255	(0.7)	7.2	[0.1]	92.8
855	495	(1.5)	9.0	[1.9]	91.0
856	490	(1.4)	8.0	[1.0]	92.0
857	25	(0.1)	11.6	[4.5]	88.4
862	361	(1.1)	1.8	[−5.3]	98.2
869	30	(0.1)	8.2	[1.1]	91.8
901	71	(0.2)	9.1	[2.0]	91.0
902	39	(0.1)	10.5	[3.5]	89.5
911	210	(0.6)	9.5	[2.4]	90.5
912	400	(1.2)	10.1	[3.0]	89.9
951	139	(0.4)	4.2	[−2.9]	95.8
952	296	(0.9)	3.2	[−3.9]	96.8
953	166	(0.5)	5.5	[−1.6]	94.5
961	900	(2.6)	8.0	[1.0]	92.0
969	329	(1.0)	8.2	[1.1]	91.8

자료: 개인사업자DB 2012~17년 전체 자료.

□ <부표 5>는 연도별 연계 및 미연계 자료의 사업주 연령, 매출액, 업력 등에 관한 평균(표준편차)값과 연계/미연계 간 격차를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전체 자료의 미연계자료상 사업주의 평균 연령은 46.8%이며 연계자료의 사업주 평균 연령은 50.1세임

〈부표 5〉 연계자료와 미연계 자료의 기술통계 – 연령, 매출액, 업력

(단위: 세, 백만 원, 년, %)

	미연계			연계					
	연령	매출	업력	연령		매출		업력	
전체	46.8	112.2	3.7	50.1	(107)	188.2	(167.8)	7.4	(198.6)
	[13.7]	[1314.8]	[8]	[12.1]		[1934.9]		[12.1]	
2012	46.4	104.4	4.4	49.2	(106.1)	184.2	(176.5)	6.9	(157.4)
	[12.4]	[1768.1]	[5.6]	[11.8]		[980.6]		[12.8]	
2013	47.0	117.0	4.7	49.6	(105.5)	184.3	(157.5)	7.1	(153)
	[12.6]	[1294.2]	[5.9]	[11.8]		[862.1]		[12.2]	
2014	47.9	104.7	4.8	49.9	(104)	183.2	(175)	7.2	(149.7)
	[13.1]	[923.5]	[6.1]	[12]		[2273.3]		[12.1]	
2015	47.1	99.0	3.4	50.2	(106.6)	195.9	(197.9)	7.4	(216.7)
	[15.7]	[882.1]	[12.4]	[12.1]		[1166.5]		[12.6]	
2016	46.3	115.5	2.7	50.6	(109.3)	189.7	(164.2)	7.7	(288.1)
	[14.3]	[1215.2]	[11.1]	[12.2]		[3608]		[12.9]	
2017	46.8	125.9	2.7	50.9	(108.7)	191.2	(151.8)	7.8	(283.7)
	[14.3]	[1228.1]	[4.8]	[12.3]		[929.7]		[9.9]	

자료: 개인사업자DB 2012~17년 전체 자료.

주: [ ] - s.d., (%) - 미연계 대비 비중.

□ <부표 6>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추가하여 계상해본 연계율을 제시

○ 전체 자료의 연계율은 1.8%p 상승한 94.4% 수준이며, 2017년, 2016년이 각각 3.9%p, 3.4%p 상승해 큰 연계율의 개선을 시현

○ 통계청과 kcb는 연계율 향상을 위한 개선작업을 지속 중

〈부표 6〉 연계정보의 추가와 연계율 변화

	키 1.	미연계율	키 2.	미연계율	연계율 차이 증감
전체	92.6	7.4	94.4	5.6	1.8
2012	90.0	10.0	90.3	9.7	0.3
2013	92.3	7.7	92.7	7.3	0.4
2014	95.0	5.0	95.5	4.5	0.4
2015	94.5	5.5	96.4	3.6	1.9
2016	92.3	7.7	95.7	4.3	3.4
2017	91.8	8.2	95.7	4.3	3.9

주: 키 2의 연계정보는 키 1의 연계정보 성별, 연령, 및 성명 등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

□ <부표 7>은 2016년 SBR 전체자료를 활용하여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개인이 복수의 사업체를 소유(활동여부 무관)하고 있는 비중을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동일여부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산업 세세분류 등으로 식별할 경우(개인식별키 1.)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비중(head count)은 약 17% 수준

〈부표 7〉 SBR 자료를 활용한복수 사업체 운영 비중

	개인식별키 1: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산업 세세분류	개인식별키 2: (1+광역시도)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산업 세세분류 & 광역시도	개인식별키 3: (1+광역시도)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산업 세세분류 & 읍면동
한 개	82.97	88.28	91.99
두 개	12.71	9.53	6.79
세 개	2.81	1.6	0.92
네 개	0.84	0.38	0.19
다섯 개+	0.67	0.21	0.11

자료: 2016년 SBR 전체자료, 법인 제외, 협회 및 단체 제외, 산업 O, T, U 제외.

주: 개별 사업체의 유일성 여부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식별, 즉,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중복사업체 삭제.

○ 개인식별키 1.의 변수에 (동일) 광역시도 조건을 추가하면(개인식별 2.) 위에서 소개한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비중은 11.7% 수준이며, 개인식별키 3.의 변수 기준으로 약 8% 수준

○ 동일인이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으로 kcb 부채정보를 연계한다면 부채총량이 과다 계상될 수 있음

○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DB상 식별기호를 부여하여(flag변수 추가) 부채 등 금융활동 값을 계상할 때 참고할 필요

집필진

- 권태구(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윤병우(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주무관)

연구보고서 2019-06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 분석

인 쇄	2020년 5월 18일
발 행	2020년 5월 19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